

남북한 군비통제의 포괄적 이행방안: 미·북관계 및 남북관계 개선 관련

1995. 12

박 중 철(정책연구실 연구위원)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報告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서 發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政策研究室

서 문

국제적인 군비축소 추세와 남북한간 「기본합의서」 및 「불가침 분야 부속합의서」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간 군비통제는 여전히 담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남북한군비통제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남북평화공존체제의 정착을 위해서 반드시 이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더욱이 미·북관계개선 과정에서 한반도의 긴장완화 및 군사적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군비통제문제가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남북한간 군비통제 논의의 전개과정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군비통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구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미·북관계 및 남북관계 진전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이들간의 관계 변화에 따른 단계적 군비통제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가 남북한군비통제의 다차원적 성격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포괄적이고 단계적 이행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995. 12.

민족통일연구원

정책연구실

요약

이 연구는 남북한 군비통제의 다차원적 성격과 관련 이슈의 상호연계성을 고려하여 남북한 군비통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남북관계 및 미·북관계 개선과 연계한 단계별 군비통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군비통제의 세부적이고 기술적 방안보다는 군비통제 협상의 시점과 형태, 추진방식 등과 같은 군비통제의 포괄적 틀을 제시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1. 남북한간 군비통제 논의의 전개

남북한은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형태의 군비통제 및 군축방안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표명했다.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남북한의 군비통제 제안은 실현 가능성과 타협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기보다는 대내외 선전과 선제제안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1980년대 말까지 제안된 북한의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 제안」과 남한의 군비통제 방안의 주요 특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군비통제 및 군축에 대한 기본접근방법 및 단계에 대한 차이이다. 남한은 정치적 신뢰구축과 군사적 신뢰구축, 군비감축을 단계적으로 제시하였으며, 특히 정치적 신뢰구축 및 군사적 신뢰구축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 남한은 상호신뢰와 협력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사적 신뢰구축이나 군비축소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북한은 군축우선론을 주장하였으며 군축의 전제조건으로 주한미군철수,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 등을 주장하였다.

둘째, 남북한은 다같이 군사적 신뢰구축에 대한 항목을 두었다. 군사적 신뢰구축에 관한 조항으로 군사연습의 사전통보, 고위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등에 대해서는 남북한이 공통된 입장을 보였다.

셋째, 군축방안에 대해서 남북한은 현격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우선 감축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남북한은 정반대의 입장을 나타냈다. 남한은 무기감축을 우선 실시하고 이에 따라 병력감축을 실시하며, 상비전력감축에 상응하여 예비전력 및 유사 군조직도 함께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남한은 북한의 우세한 무기에 대한 우선적 감축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병력감축을 우선 실시하고 이에 상응하여 군사장비도 축소·폐기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 다음 군축의 기준에 대해서 남한은 일단 상호동수보유원칙에 입각해 군사력을 과다하게 보유한 측이 적게 보유한 측의 수준으로 먼저 감축하여 상호동등수준을 달성한 후, 그 다음 단계에서 동수균형감축 방식으로 군축을 추진하여 군사력의 상호균형을 유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반면, 북한은 남북한이 3~4년 동안 3단계(30만, 20만, 10만)로 나누어 동일수준으로 동시에 병력을 감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검증문제에 대해서는 남한이 공동검증단과 상주감시단

의 구성을 통한 검증의 제도화를 강조한 반면, 북한은 무력감축
정형의 통지와 현지시찰을 통한 검증만을 제시하였다.

한편, 북한의 방안은 외국무력철수를 별도의 항목으로 설정하여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와 한반도에서 외국군대의 철수를 강조하
였다.

넷째, 군축 후 평화보장문제에 대해서 북한은 보다 자세한 방안
을 제시하였다. 남한은 쌍방군사력의 최종수준을 통일국가의 군
사력을 감안하여 합의하에 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북한은 군축
과 그 이후의 평화보장문제에 대해서 비무장지대내에 중립국감시
군 배치,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불가침선언, 정전상태의
평화상태선언,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미·북회담 또는 3자회담 등
을 제안하였다.

이처럼 남북한의 군비통제방안은 기본방향, 우선순위, 목표, 등
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차이를 보였다. 남한의 방안은 점진적으로
신뢰구축을 조성한 바탕위에서 공격형무기 감축을 우선 추진한다
는 목표를 지녔으며, 구체적인 군축과 그 이후의 평화보장문제는
추후에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북한의 방안은 급속한
병력우선감축과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관계약화, 평화상태전환
을 위한 미·북회담 또는 3자회담 등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1992년 12월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가운데 불가침관련분야(9
조~14조)가 포함되었으며, 8차 남북고위급회담(1992.9)에서 「불가
침분야 부속합의서」가 채택됨으로써 남북한군비통제의 기본 사항
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북한핵문제에 인하여 1992년

11월 12일 개최 예정이었던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무산된 이후 당국간 남북대화는 재개되지 않고 있다.

2. 남북한군비통제의 접근방향

남북한군비통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군비통제의 세부이행 방안을 제시하는 것 보다 군비통제의 전반적인 접근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한반도의 안전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남북한군비통제를 실천에 옮기는 종합적 구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군비통제의 세부적 이행방안을 강구하기에 앞서, 미·북간 군비통제협상 방지, 군비통제와 평화체제 전환, 군비통제와 한·미안보관계의 조정, 군비통제에 대한 남북한의 인식론적 접근, 남북한간 군비통제 협상, 신뢰구축과 군축에 대한 일괄협상, 대북인센티브 제공 등과 같은 군비통제의 포괄적 접근 구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미·북관계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한반도군비통제문제는 미·북간 중요 현안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과정에서 북한과 미국간에 별도의 군사협상통로가 모색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남한이 배제된 채 미국과 북한간 한반도군사문제 및 군비통제에 대한 협상이 진행된다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미간 긴밀한 정책협조를 통해 남북한협상에 의해서 한반도군사문제와 군비통제에 대한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한반도평화체제 전환은 평화체제의 개념, 평화체제 전환의 형식, 평화체제전환의 당사자, 유엔군사령부의 해체 등과 같은 복잡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평화체제전환에 관련된 이러한 사안들은 남북한군비통제의 협상주체와 추진구도, 군비통제의 검증 등과 연관되어 있다.

셋째, 남북한군비통제는 한·미동맹관계, 주한미군의 역할,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한·미합동군사훈련 등 한·미안보관계에 관련된 사안들에 대한 정책조정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남북한군비통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미안보관련 사안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조정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넷째, 남북한의 군비통제에 있어서 세부적인 기술적 문제에 대한 견해차이의 절충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신뢰구축, 군비통제, 군비축소, 안보개념에 대한 상호 인식론적 차이를 줄이는 것이다. 군비통제에 대한 남북한의 인식론적 차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노르웨이나 스웨덴,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제3국에서 남북한군비통제실무자와 학자, 전문가들이 모여 비공개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다. 또한 국제기구나 제3국, 연구기관 등을 통해 북한의 연구기관 및 관련 전문가들에게 군비통제관련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북한관련자들의 지식획득을 지원할 수도 있다.

다섯째, 남북한군비통제의 가장 바람직한 방식은 남북한이 직접 협상을 진행하고 미국이 배후에서 이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남북한은 당사자해결원칙에 입각하여 군비통제의 전반적 사항에

대해서 협상을 진행하고 미국은 북한에게 남북한간 직접 대화가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은 매 사안마다 긴밀히 협조해야 할 것이며, 특히 주한미군의 역할과 감축계획,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 등과 관련해서는 한·미간 긴밀한 정책협조가 필요할 것이다.

여섯째, 남북한군비통제에서는 신뢰구축 조치와 함께 북한의 우월한 재래식군사력과 북한의 전진배치, 북한의 기습공격능력 등과 같은 요인들이 포괄적으로 협의되어야 한다. 또한 북한측의 입장에서 볼 때, 군비통제의 주요 관심사는 신뢰구축 조치보다는 한·미동맹관계, 주한미군, 한·미합동군사훈련, 평화체제전환 등 한반도안보환경 전반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군비통제의 경우 이러한 구조적 상황요인과 군비통제 자체의 요인들을 협상할 수 있는 종합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신뢰구축과 운용적 군비통제, 구조적 군비통제에 대한 이행계획표를 마련하여 이를 토대로 일괄타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남북한간 신뢰구축과 군비통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입장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한다. 남북경협규모의 확대나 대북차관제공, 국제금융시장에서 북한채권의 인수, 북한군수산업의 민수화전환 지원 등과 같은 대북유인정책이 북한의 상응하는 정책변화와 연계하여 검토될 수 있다.

3. 미·북관계 및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남북한군비통제 추진방안

남북한군비통제는 한편으로는 미·북관계 진전과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관계의 전반적 틀과 관련을 맺으면서 전개될 것이다. 미·북관계 및 남북관계를 고려한 남북한군비통제방안은 일종의 이행 계획표와 같은 성격을 지닌 것으로 대북협상 및 한·미정책협조를 위한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

가. 1단계, 미·북연락사무소 및 남북대화 재개: 군사적 신뢰구축

1단계는 미·북연락사무소가 설치되고 부분적으로 남북대화가 재개되는 기간이다. 이 기간 동안 북한핵동결이 유지되는 가운데 KEDO-북한간 경수로공급협정이 체결되고 KEDO와 주계약자간 상업계약이 체결될 것이다.

첫째, 1단계에서는 통신, 통보, 군인사교류, 참관, 정보교환 등 신뢰구축조치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신뢰구축조치들은 남북한 상호의 군사력상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게 함으로써 군사적 공격가능성을 제한하고, 상대방의 군사적 공격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전에 탐지할 수 있으며, 향후 군비통제를 위한 협상창구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더욱이 남북한과 같이 군사적 대립과 상호불신이 뿌리깊은 경우, 시범적 신뢰구축 조치만이라도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신뢰구축조치의 목록이나 구체적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구축조치를 탐색하고 협상하고 주

도하며, 이해하는 과정에서 정책결정자와 전문가, 일반인들 사이에 신뢰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둘째, 신뢰구축과 연계하여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및 경제협력 사업, 대북차관제공 등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대북차관기금」을 조성하여 북한에 차관을 제공하거나 국제금융기관의 대북차관을 보증하거나 「국제금융채권단」에 한국의 해외법인 금융기관이 참여하여 대북차관을 제공할 수도 있다. 또한 IMF, IBRD, ADB 등 국제금융기구에 북한이 가입하는 것을 지원할 수도 있다.

셋째, 신뢰구축의 초기 단계에서는 남북한이 상호검증체제에 대해서 합의하기 힘들 것이기 때문에 남북한이 독자적으로 검증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이 독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검증 방법에는 군사용 및 상업용 인공위성, 감시 및 조기경보용 통신 정보(communication intelligence: COMINT), 전자정보(electronics intelligence: ELINT), 영상정보(image intelligence: IMINT)의 수집 등의 방법이 있다.

나. 2단계, 미·북관계 진전 및 남북화해·협력: 운용적 군비통제와 선별적 군축

2단계는 미·북연락사무소개설 이후 미·북관계가 진전되고 경수로건설을 위한 세부계획이 진행되는 기간이다. 그리고 남북간에는 화해·협력을 위한 구체적 협력방안들이 이행될 것이다.

첫째, 2단계의 운용적 군비통제와 관련하여 비무장지대 비무장

화, 배치제한지역 설정, 남북한 군사력의 후방배치문제가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한·미합동군사훈련 및 주한미군의 후방배치 및 단계적 철수문제를 집요하게 주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전력배치제한지역에 대한 문제 논의시 동 문제가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비무장지대에 설치된 장비와 시설물들을 철거하고 전방 배치된 무기와 병력을 후방으로 이동배치하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남북한의 경우, 북한이 비무장지대의 시설 및 장비를 철거하는 비용을 차관형식으로 제공하고 이 지역에 공단건설시 그 이익금에서 상환하도록 할 수 있다. 그리고 배치제한지역 설정으로 인한 무기 및 병력의 후방이동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군인들의 주택건설 등 정착비용의 일부를 무이자 차관으로 제공할 수도 있다.

셋째, 운용적 군비통제단계에서는 독자적으로 실시되었던 공중정찰을 조정하고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산하에 「검증실무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검증실무위원회에서 검증의 대상, 절차, 방법 등에 관해서 「검증부속합의서」를 채택해야 할 것이다.

다. 3단계, 미·북관계정상화 및 남북연합: 구조적 군비통제

3단계에서는 미·북간 관계정상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한편,

남북한간에는 남북연합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실천에 옮겨질 것이다.

첫째, 병력 및 무기의 감축을 동시병행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공격무기를 해체하고 동 무기를 보유한 부대의 병력을 감축하는 방안을 택할 수 있다. 그리고 군사력감축기준으로는 일차적으로 「동수보유원칙」에 입각하여 대상무기 및 병력에 대한 「동일상한선」(equal ceiling)을 설정해야 한다. 그 다음 상한선에 도달하기까지의 감축방식은 남북한간의 기존 전력차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동을감축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남북한의 경우에도 CFE에서와 같이 전차, 장갑차, 야포, 전투기, 공격헬기 등 다섯가지를 무기감축의 우선적인 대상으로 선정하고, 무기의 정의에 대해서도 CFE에서 적용되었던 개념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이 장거리탄도미사일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남북한의 경우 전술지대지미사일을 감축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이동식 대공무기, 연료, 탄약, 수송장비 등도 감축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무기감축을 위해 우선 최종적인 무기상한선은 남한이 보유하고 있는 전력보다 하향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 그 다음 CFE에서와 같이 남북한이 TLI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감축기분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약 3단계로 나누어 남북한이 비례적으로 무기감축을 해야 한다.

셋째, 남북한은 병력보유상한선을 설정하고 각각 감축대상병력

을 동일비율로 감축해야 한다. 남북한병력의 최종수준은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군사력과 통일한국의 최종적 군사력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병력 전체의 최종수준은 남북한전체 인구의 1%인 70만명선이 적절할 것이다. 남북한이 병력보유상한선을 각각 35만명으로 설정하면, 남한은 약 30만명을 감축해야 하며, 북한은 약 68만명을 감축해야 한다. 이에 따라 3단계에 걸쳐 병력감축을 실시하되, 각 단계별로 감축규모의 33%를 감축하도록 한다.

넷째, 군비축소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을 위해서 북한에게 무이자 내지는 저리의 장기차관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병력감축시 퇴직군인들의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 한국의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의 무기감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군수산업의 민수산업전환을 지원할 수도 있다. 아울러 병력감축을 추진할 경우 북한의 제대군인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고용구조의 확대를 위한 대규모의 남북경협사업이 필요하다.

다섯째, 군비축소를 검증하기 위해서 영공개방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상주감시단을 운영해야 한다. 상주감시단은 비무장지대의 주요 지역과 배치제한지역의 주요 지점에 설치되어야 한다. 상주감시단의 활동은 상호 보장되어야 하며, 이들의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도록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상주감시단의 구성 방안으로는 남북한의 독자적 감시단, 남북한공동감시단, 국제적 합동감시단 등의 방법이 있다.

목 차

제 I 장 서 론	1
1. 문제제기	1
2.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4
제 II 장 남북한간 군비통제 논의의 전개	10
1. 1980년대까지 남북한의 군비통제 제안	12
2. 1990년대 남북한 군비통제 논의	19
제 III 장 남북한군비통제의 접근방향	24
1. 미·북간 군비통제협상 방지	24
2. 군비통제와 평화체제 전환	33
3. 군비통제와 한·미안보관계 조정	39
4. 군비통제에 대한 남북한의 인식론적 접근	45
5. 남북한간 군비통제 협상	47
6. 신뢰구축 및 군축에 대한 일괄협상	51
7. 대북인센티브 제공	53

제V장 미·북관계 및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남북한군비통제	
추진방안	59
1. 1단계, 미·북연락사무소 개설 및 남북대화 재개:	
군사적 신뢰구축	61
가. 군사적 신뢰구축	65
나. 신뢰구축과 대북경협 및 차관제공	76
다. 남북한의 독자적 검증 실시	78
2. 2단계, 미·북관계 진전 및 남북화해·협력:	
운용적 군비통제와 선별적 군축	79
가. 운용적 군비통제 및 선별적 군축	81
나.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및 배치제한지역 설정의	
비용부담	91
다. 공중정찰 협력과 현장검증	93
3. 3단계, 미·북관계 정상화 및 남북연합: 구조적 군비통제 ...	95
가. 구조적 군비통제	96
나. 군축비용 지원 및 북한군수산업의 민수화 지원	106
다. 영공개방의 확대와 상주감시단 운영	107
제VI장 결 론	110
참고문헌	114

제 I 장 서 론

1. 문제제기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탈냉전의 국제적 추세속에서 유럽지역에서는 1990년 12월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 I」(Conventional Forces in Europe Treaty: CFE I), 1990년 7월 「전략무기감축조약 I」(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 I: START I), 1993년 「전략무기감축조약 II」(START II)등이 체결되는 등 군비축소가 진행되었다.

남북한도 탈냉전과 국제적 화해추세를 반영하여 1990년 9월부터 남북고위급회담을 개최하여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및 「분야별 부속합의서」를 채택하고 각종 분과위원회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합의하였다. 남북한은 「기본합의서」의 불가침분야 및 「불가침분야 부속합의서」(정식명칭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합의서)임을 채택함으로써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 검증문제 등에 대해서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1992년 11월 12일로 예정되어 있던 남북군사공동위원회와 12월 21일 개최 예정이던 제9차 남북고위급회담이 무산된 이후 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남북대화는 재개되지 않고 있다.

한편, 북한핵문제를 계기로 미국과 북한은 1993년 이후 일련의

미·북고위급회담을 거쳐, 1994년 10월 21일 기본합의문(Agreed Framework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을 채택함으로써 북한핵문제의 해결과 포괄적 미·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틀을 마련하였다. 앞으로 미·북관계의 진전에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양국관계 개선은 기본적으로 미·북제네바 기본합의문의 틀에 따라 이행될 것이다. 미·북관계 개선과정에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수출문제, 미군유해송환문제, 북한의 인권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북한의 전진배치군대의 후방이동, 남북한군비통제 등의 문제도 미·북관계선과정에서 주요 안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북관계개선은 북한의 국제사회로의 진입과 북한의 개방·개혁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미·북관계 개선을 통해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 승계체제의 불확실성 등 복합적인 위기를 해소하려고 하는 한편, 남북화해·협력과 남북평화 공존체제의 정착에는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미·북간 정치·군사협상을 통해서 북한은 미·북간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철수문제를 집요하게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북관계개선의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하면서도 이로 인한 남북관계의 경색, 한반도문제의 국제화현상 등 부정적 요인을 최소화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남북한군비통제문제는 한반도긴장완화와 평화체제정착을 위해서 필수적인 사항이 아닐 수 없다.

본 보고서는 남북한군비통제의 다차원적 성격과 관련 이슈의 상호연계성을 고려하여 남북한군비통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남북관계개선 및 미·북관계개선과정과 연계한 단계별 군비통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군비통제의 세부적이고 기술적 방안보다는 군비통제협상의 시점과 형태, 추진방식 등과 같은 군비통제의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남북한간 군비통제협상의 현황과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향후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개최시 논의될 주요 안전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남북한간 군비통제논의의 현황을 검토함으로써 앞으로 남북군비통제협상의 재개시, 우선적으로 논의될 안전 및 쟁점사항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을 검토하고자 한다.

둘째, 미·북관계개선을 전망하고 이과정에서 대두될 남북한군비통제문제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입장을 전망하고자 한다. 미·북관계개선과정에서 남북한군비통제논의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점점함으로써 남북한 군비통제의 시점과 이행조치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남북한 군비통제의 기본구도로서 남북한군비경쟁과 군비통제, 군비통제에 대한 남북한의 인식론적 접근, 군비통제에 따른 한·미안보관계 조정, 군비통제와 평화체제전환, 군비통제협상의 주체, 군비통제추진과정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넷째, 남북관계 개선 및 미·북관계 개선과 연계한 단계별 군비

통제방안을 3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각 단계별로 군사적 신뢰구축, 운용적 군비통제, 구조적 군비통제방안과 대북협상 수단, 검증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2.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본 연구의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신뢰구축, 군비통제 및 군축의 개념에 대한 것이다. 신뢰구축(confidence building measures) 또는 신뢰 및 안보구축(confidence and security building measures)은 억지력(deterrence)의 “능력”(capacity)보다 “의도”(intention)와 “의사”(will)를 제한하는 것으로 기습공격방지에 대한 보장(reassurance), 군인사의 교류 및 정보교환을 통한 투명성(transparency), 위기상황에 대한 예측성(predictability)을 통해 갈등을 관리하려는 조치이다. 신뢰구축에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조치와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들이 포함된다.

군비통제(arms control)는 상호억지(mutual deterrence)를 통해 우발적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전쟁의 부정적 결과를 극소화하며, 군비경쟁을 통제 및 관리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전쟁수단인 군비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관리 및 가능한 범위에서 축소함으로써 전략적 안정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군비통제는 운용적 군비통제(operational arms control)와 구조

적 군비통제(structural arms control)로 구분된다.

운용적 군비통제는 공격의사가 없음의 입증, 정치적 목적을 위한 군사적 능력의 사용 축소,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인 군사적 활동의 제한, 우발적 무력충돌의 가능성 감소, 구조적 군비통제 유도 등의 목적을 지니고 있다. 운용적 군비통제에는 군사활동이나 무기실험에 대한 통보, 군사시설 및 군사활동에 대한 참관, 군사정보의 교환, 핫라인이나 위기관리센터, 조기경보체제 등을 통한 통신, 군사활동의 제한이나 무기배치제한지역의 설정 등에 대한 배치제한조치 등이 포함된다. 헬싱키협정(1975)과 스톡홀름협정(1986)이 운용적 군비통제의 성공적 사례에 포함된다.

구조적 군비통제는 무기 및 병력의 동결(freezing), 제한(limitation), 감소(reduction)를 통해 군비지출 및 전력구조의 변화를 목표로한다. 구조적 군비통제에는 군비제한(arms limitation)과 전력수준의 감축(force level reduction)이 포함된다. 상호균형감군협정(Mutual and Balanced Force Reduction: MBFR)은 구조적 군비통제의 한 예다.

그리고 군축(arms control), 또는 군비철폐(disarmament)는 군비를 축소, 혹은 완전 철폐함으로써 전쟁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제거한다는 이상주의적 철학에 토대를 두고 있다.¹⁾

1) Gerald Segal, ed., *Arms Control in Asia* (London: Macmillan, 1987); Andrew Mack and Paul Keal, *Security and Arms Control in the North Pacific* (Sydney: Allen and Unwin, 1988); James Goody, "Confidence and Security Building in the Korean Peninsula: The Negotiating Agenda," *In 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Seoul: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1990); 이서향, "군축협상의 사례분석과 남

본 연구에서는 군사적 신뢰구축과 운용적 군비통제, 구조적 군비통제의 조치가운데 미·북관계 및 남북관계의 전개과정과 연계하여 적용가능한 조치들을 선별적으로 검토·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는 남북한군비통제의 포괄적 틀을 제시하기 위해서 남북관계와 미·북관계, 한·미안보관계 등과 연계하여 남북한군비통제방안에 관한 이행계획표(road map)를 제시하고자 한다.²⁾ 미·북관계와 남북관계를 3단계로 설정하고 각 단계에서 이행가능한 남북한군비통제방안과 한·미안보관계와 관련된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미·북관계는 미·북연락사무소설치단계, 미·북관계 진전단계, 미·북관계정상화단계로 구분하고자 한다. 그리고 남북관계는 남북대화재개 단계, 남북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등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셋째, 남북한군비통제의 이행구도를 위하여 어떤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가 하는 점이다. 남북한군비통제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우선 유럽의 군비통제사례를 정리하고 여기에서 도출된 시사점

북한군축전망,” 함택영 외, 「남북한 군비경쟁과 군축」(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2) pp. 237~264; 이달곤, “군축이론에 입각한 남북한 군축협상 대안 연구,” 「국방학술논총」, 제3집 (1989), pp. 130~202; 남주홍, “군축의 일반이론에 대한 고찰,” 「국제정치논총」, 제29집 1호 (1989) pp. 59~69; 문정인, “남북한 신뢰구축: 그 가능성과 한계,” 함택영 외, 「남북한 군비경쟁과 군축」, pp. 183~215.

2) 박영규는 한반도군비통제의 포괄적 구도를 위해서 국제협력과 남북한 정치관계, 남북한군사관계, 한·미관계를 연계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박영규, “동·서군축협상의 경험과 한반도군비축소의 문제,” 이호재 편, 「한반도군축론」(서울: 법문사, 1989), pp. 219~221.

을 남북한군비통제에 적용하려는 연구들이 있었다.³⁾ 유럽군축사례가 남북한군비통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시사점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반도에는 유럽의 CSCE와 같은 다자간 안보협력구조의 결여, 복잡한 양자간 동맹관계, 남북간 첨예한 군사적 대립, 상호실체의 불인정, 상호불신, 상호 군사력평가에 대한 합의 결여, 군비통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 등 유럽의 상황과는 다른 측면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군축사례를 그대로 남북한상황에 적용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그리고 한반도의 안보상황과 남북한의 군사력상황, 군비통제에 대한 남북한의 제안 및 입장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있다.⁴⁾ 이

-
- 3) 외교안보연구원, 「남북한군축문제에 관한 연구」(서울: 외교안보연구원, 1989); 전성훈, 「한반도군비통제방안연구: 유럽 군비통제조약의 시사점과 관련하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박영규, “동-서군축협상의 경험과 한반도 군비축소의 문제,” 박홍규, “유럽의 신뢰성구축방안과 이의 한반도적용가능성,” 「외교안보연구원 논총」(서울: 외교안보연구원, 1986); Jonathan Dean, “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How is the European Experience Applicable,”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3, no. 1 (Summer 1991); James Goody, “Operational Arms Control in Europe: Implications for Security Negotiations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 no. 1 (Summer 1990); Robert E. Hunter, “Lessons for Korea from Conventional Arms Control Talks in Europe,”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 no. 1 (Summer 1990).
- 4) 박홍규, 「남북한군사문제에 대한 연구」(서울: 외교안보연구원, 1989); 외교안보연구원, 「남북한군축문제에 관한 연구」(서울: 외교안보연구원, 1989); 이호재 편, 「한반도군축론」(서울: 법문사, 1989); 차영구, 「남북한군축협상 추진방안 모색」(서울: 통일원, 1991); 함택영 외, 「남북한군비경쟁과 군축」(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2); 신정현, 「한반도의 군비통제」(서울: 예진출판, 1990); 하영선,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서울: 청계연구소, 1991); 구영록 외, 「남북한의 평화구조」(서울: 법문사, 1990); 송대성, “한반도군축타당성에 관한 검토: 한반도 군축의 가능성 및 제약성,” 「국제정치논총」, 제29집 1호 (한국국제정치학회,

연구들은 한반도의 특수성을 분석하고 군비통제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한반도상황에 맞는 남북한군비통제방안을 제시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탈냉전후 상황과 남북관계의 변화, 미·북관계 개선, 한·미 안보관계의 변화가능성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워게임(war game)이나 시뮬레이션(simulation) 등 과학적 기법을 이용하여 병력감축의 규모나 무기상한선, 군비통제의 계량적 조건 등을 설정하려는 연구들이 있었다.⁵⁾ 이러한 연구들은 군비통제협상의 구체적 추진과정과 세부사항에 대한 협상시 참고자료나 정책지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한군비통제협상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러한 세부사항이나 구체적 대응전술의 수립보다는 군비통제의 포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존연구들의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유럽군축 사례의 세부적 검토나 군비통제협상시 구체적 협상안건을 검토·제시하기보다는 남북한군비통제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조건과 남북한이 합의가능한 포괄적 이행조치의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남북한 군비통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세부적인 신뢰구축조치나

1989); 안병준, “남북한 군축의 방향,” 『국제정치논총』, 제29집 1호 (한국국제정치학회, 1989); 양성철, 조덕현, “남북한 군비통제 제안분석 및 평가,” 『한국정치학회보』, 제21집 1호 (한국정치학회, 1987); 박영규, “한반도에서의 운용적 군비통제방안,” 통일원, 『한반도긴장완화와 평화정착』 (서울: 통일원, 1990).

5) 「남북한 군비통제협상 적용모형 연구」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1992); 「남북한 군비통제 모형개발 II」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1993); Yong-Sup Han, *Designing and Evaluating Conventional Arms Control Measures: The Case of the Korea Peninsula*, RAND Corporation, N-3411, 1993.

군비통제, 검증의 기법이나 기술이 아니라 신뢰구축과 군비통제를 추진할 수 있는 포괄적 협상틀을 마련하는 것이다.⁶⁾

본 연구는 남북한 군비통제의 포괄적 이행을 위해서 각 단계별로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와 운용적 군비통제, 구조적 군비통제 방안을 선별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아울러 대북협상수단으로 대규모경첩 및 차관 제공, 군축비용의 부담, 북한군수산업의 민수화 전환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각 단계별로 적용 가능한 검증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처럼 남북한군비통제의 포괄적 이행방안을 미·북관계 및 남북관계 진전과 관련하여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군비통제방안, 대북유인 제공, 검증방안을 연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넷째, 본 연구는 핵무기, 화학무기, 세균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문제는 일단 논의로 하고 재래식 무기의 운용 및 감축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동문제는 남북한간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 사안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재래식군축무기의 감축을 통한 군사적 긴장완화가 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6) 이러한 맥락에서 남북군축을 위해서 「개념적인 정치적 틀」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이서항, “군축협상의 사례분석과 남북한 군축전망,” 함택영 외, 「남북한군비경쟁과 군축」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2), p. 264.

제II장 남북한간 군비통제 논의의 전개

냉전체제하에서 몇가지 구조적 요인들이 남북한군비통제를 제약해 왔다. 첫째, 한국전쟁의 경험과 상호불신 및 대립이 군비통제보다는 군비경쟁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만들었다. 군비통제에 대해서 북한이 훨씬 적극적이었으나,¹⁾ 사실상 북한의 군비통제관련 제의는 주한미군철수와 대남무력혁명을 위한 정치선전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아울러 공격무기의 우위, 공격에 유리한 지리적 조건, 군사적 동원이 가능한 병영화된 체제 등도 북한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군비통제를 제안하게 하였다. 남한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의 각종 대남도발과 기습공격이 행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군비통제는 대북경계심을 약화시키고 한국의 방위태세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둘째, 미·소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적 냉전구조에서 남북한 주도에 의한 군비통제협상은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유럽의 군축협상이 동서진영의 집단안보체제인 NATO와 WTO간의 협상을 통해 진행된 반면, 동북아에는 이러한 집단안보체제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으며, 미, 소를 중심으로 한 양자적 동맹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양자적 동맹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게 될 한반도에서의 군비통제가 남북한협상에 의해서 진행되기 힘들었다.

1) 한 연구에 의하면 1945년 이후 1988년까지 남한은 17개의 군축관련 안건을 총 64회 제안한 반면, 북한은 27개의 군축 안건을 총 236회 제안하였다. 송대성, “한반도 군축 타당성에 관한 검토: 한반도 군축의 가능성 및 제약성,” 『국제정치논총』, 제29집 1호(1989), pp. 91~95.

더욱이 주한미군과 한·미동맹관계에 안보를 의존하고 있는 남한의 경우, 군비통제협상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율성이 제약되어 있었다. 이러한 남한의 자율성의 제약은 역으로 북한에게 군비통제 제안에 적극적으로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군비통제는 군사적 측면에서의 기술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각국의 국내정치·경제구조와 관련된 복합적 문제이다. 유럽의 군축협상의 성과인 「스톡홀름협약」(Stockholm Document, 1986. 9), 「중거리핵미사일폐기조약」(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INF, 1987. 12),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 I」(Conventional Forces in Europe Treaty: CFE I, 1990. 12), 「전략무기감축조약 I」(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 I: START I, 1991. 7), 「비엔나협약」(Vienna Document), 「전략무기감축조약 II」(START II) 등은 소련에서 고르바초프의 등장이후 페레스트로이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능하였다.

남북분단구조는 남북한의 군사비지출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정치·사회를 권위주의화·동원체제화시켰다. 남북한 군비통제는 남북한의 국내 정치경제질서의 변화를 수반하는 문제이다. 남북한군비통제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의 포기와 병영사회인 북한체제의 변화를 수반하는 문제이다. 또한 남한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도 군비통제는 권위주의체제의 민주화와 대북안보의식의 약화 등을 초래함으로써 정치·사회적 파급효과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의 구조적 개혁과 민주화가 수반되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군비통제협상은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구조적 제약속에서도 남북한은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형태의 군비통제 및 군축방안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표명해 왔다.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남북한의 군비통제제안은 실현가능성과 타협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기보다는 대내외 선전과 선제제안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1990년대에 접어들어 남북한의 군비통제 및 군축제안은 보다 구체화된 형태를 띠었으며, 「기본합의서」 및 「불가침분야 부속합의서」를 채택하기에 이르렀으나 실질적인 군비통제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 1980년대까지 남북한의 군비통제 제안

남북한군비통제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들로 인해 198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남북한의 다양한 군비통제관련 제안은 사실상 정치적 선전과 상호대응의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1988년까지 남북한이 제안한 군축관련 제안가운데 합의가 가능한 분야는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긴장완화, 남북공동군사위원회 구성 등이었다. 반면, 남한이 제안한 사항가운데 남북한 상호불가침협정 체결, 북한의 무력적화통일 포기, 북한의 폭력혁명 및 무력도발 포기 등과 북한이 제안한 사항가운데 주한미군철수, 평화협정 체결, 10만으로 군사력 감축 등은 합의되기 힘든 사안들이었다.²⁾

2) 군축관련 북한의 제안은 미군철수, 평화협정 체결, 군대 10만 감축, 군사력증강 중지, 무력충동의 위험성 제거, 군비경쟁 금지, 핵전쟁 위험 제거, 군사인원 감축, 무기반입 중지, 불가침선언 체결, 3자회담, 비무장지대 병력 및 시설 철수, 민간군사조직 해산 및 훈련 금지, 한반도비핵

북한의 군비통제 제안은 1980년대 후반 보다 구체화되었다. 북한은 1987년 7월 남북한 군대의 10만명으로의 감축,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등을 포함한 「단계적 무력감축제안」을 발표하였다. 북한은 1988년 11월 「단계적 무력감축제안」을 보완하여 3단계 주한미군철수, 1991년말까지 남북한 병력의 10만명으로의 감축, 남북한과 미국간 3자회담, 남북한간 고위 정치·군사회담 개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를 위한 신뢰구축방안 등에 관한 「포괄적 평화방안」을 제안하였다.

북한은 1990년 5월 기존의 군비통제 제안을 종합하여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을 발표하였다.³⁾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은 남북한간 신뢰조성, 남북한의 무력감축, 외국무력철수, 군축과 그 이후의 평화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한편, 남한은 북한의 대남군사력우위, 북한의 공격에 불리한 남

지대화,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원자 및 수소무기 금지, 남북한군대 최소한의 축소, 남북한군대 8만명으로 감축, 남북한간 긴장완화, UNCURK 철수, 군사정전위원회 대신 공동군사위원회 설치, 군사분계선 제거 및 군사시설 제거, 군사비삭감, 무기생산 및 사용의 무조건 금지, 군대 15만명으로 감축, 군수생산 감축, 남북한군대연합 등이었다. 그리고 남한의 군축관련 제안은 남북한상호불가침협정 체결, 남북한긴장완화 실시, 무력적화통일 포기, 무력혁명 및 무력도발 포기, UNC해체 불반대, 남북한 상호내정 불간섭, 중공군철수, 4대군사노선 포기, 비무장지대의 무기 및 병력 철수, 휴전협정대체 및 신협정보색 용의, 자유총선후 군대해산, UNC해체 용의, 20개시범사업과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정전위원회의 UN대표를 한국인으로 교체, 불가침협정 체결후 미군철수 가능, 모든 군사문제의 논의, 한반도군축의 3단계 실시 등이었다. 송대성, “한반도 군축 타당성에 관한 검토: 한반도 군축의 가능성 및 제약성,” pp. 92~95.

3) 동 제안은 1990년 5월 31일 북한의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및 정무원 연합회의에서 채택되었다.

한의 지리적 조건, 북한의 실행의지에 대한 회의, 군비통제로 인한 대북경계심의 악화, 주한미군철수를 목적으로 하는 북한의 군축의도에 대한 불신 등으로 상대적으로 군비통제에 대해 소극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은 1970년 8월 15일 남북한 긴장 완화와 북한의 대남무력통일정책 포기 촉구, 1972년 2월 비무장 지대의 비무장화 제의, 1972년 3월 북한의 4대군사노선 포기 촉구 등과 같이 단편적인 형태로 군비통제에 관한 제의를 했다. 남한의 체계적인 군비통제안은 1990년 9월 개최된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제시되었다. 이 제안은 정치적 신뢰구축, 군사적 신뢰구축, 군비감축 추진방향 등에 대한 것이었다.

북한의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과 남한의 군비통제방안의 주요 특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군비통제 및 군축에 대한 기본접근방법 및 단계에 대한 차이이다. 남한은 정치적 신뢰구축과 군사적 신뢰구축, 군비감축을 단계적으로 제시하였으며, 특히 정치적 신뢰구축 및 군사적 신뢰구축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 남한은 상호신뢰와 협력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사적 신뢰구축이나 군비축소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북한의 군축우선입장은 주한미군철수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선전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지녔다. 남한의 이러한 점진적 접근법은 유럽의 군비통제사례에서 얻어진 교훈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군사억지를 통한 전략적 현실주의입장에 토대를 두었다. 남한의 정치적 신뢰구축방안에는 상호체제인정 및 존중, 지명공격·비방·중상·전단살포·확성기방송의 중지, 신문·라디오·TV·출판물

의 상호개방, 서울과 평양에 상주연락대표부 설치 등 포괄적 관계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다.

반면, 북한의 제안은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 외국무력철수, 군축과 그 이후의 평화보장을 주장하였으나, 정치적 신뢰구축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군축과 그 이후문제를 제외하고는 순서개념을 결여하였다.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 평화협정 등이 군축의 전제조건이며,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군축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녔다. 북한은 1920년대의 군비축소 및 군비철폐(disarmament)이론에 기초하여, 전력과 군비의 감축을 통한 현상타파와 평화구축을 주장하는 이상주의적 입장을 지녀왔다.

둘째, 남북한은 다같이 군사적 신뢰구축에 대한 항목을 두었다. 군사적 신뢰구축에 관한 조항으로 군사연습의 사전통보, 고위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등에 대해서는 남북한이 공통된 입장을 보였다. 그런데 남한의 방안은 군사연습 사전통보의 부대기준과 기한(여단급 이상의 부대이동 및 기동훈련에 대한 45일전 사전통보 및 참관)을 구체화하였으나, 북한의 방안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문제에 대해서만 구체적 항목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남한의 군사적 신뢰구축방안은 군인사의 상호방문·교류 및 군사정보의 상호공개·교환 등 군사활동의 투명도 및 예측가능성 증대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북한의 방안은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대신, 외국군대와외의 합동군사연습 및 군사훈련 금지, 자기 영내에서 외국군대의 군사연습 허용 금지, 군사분계선 일

대에서 일체 군사연습 중지 등을 제안함으로써 한·미합동군사훈련의 금지 및 한·미동맹관계 악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군축방안에 대해서 남북한은 현격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우선 감축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남북한은 정반대의 입장을 나타냈다. 남한은 무기감축을 우선 실시하고 이에 따라 병력감축을 실시하며, 상비전력감축에 상응하여 예비전력 및 유사 군조직도 함께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남한은 북한의 우세한 무기에 대한 우선적 감축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병력감축을 우선 실시하고 이에 상응하여 군사장비도 축소·폐기할 것을 주장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입장은 감축된 병력을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는 체제의 특성과 군축의 종료단계까지 무기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의도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다음 군축의 기준에 대해서 남한은 일단 상호동수보유원칙에 입각해 군사력을 과다하게 보유한 측이 적게 보유한 측의 수준으로 먼저 감축하여 상호동등수준을 달성한 후, 그다음 단계에서 동수균형감축 방식으로 군축을 추진하여 군사력의 상호균형을 유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반면, 북한은 남북한이 3~4년동안 3단계(30만, 20만, 10만)로 나누어 동일수준으로 동시에 병력을 감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검증문제에 대해서는 남한이 공동검증단과 상주감시단의 구성을 통한 검증의 제도화를 강조한 반면, 북한은 무력감축 정형의 통지와 현지시찰을 통한 검증만을 제시하였다.

또한 남한은 공격형 전력의 우선감축과 공격형 전력구조의 방

어형 전력구조로의 전환을 주장한 반면, 북한은 이 사항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북한의 방안은 외국무력철수를 별도의 항목으로 설정하여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와 한반도에서 외국군대의 철수를 강조하였다. 특히 주한미군과 장비를 남북한 군축에 상응하게 단계적으로 완전철수하며, 미군철수에 상응하게 미군기지들도 단계적으로 철폐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군축의 주안점이 주한미군철수에 있음을 입증하였다.

넷째, 군축후 평화보장문제에 대해서 북한은 보다 자세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남한은 쌍방군사력의 최종수준을 통일국가의 군사력을 감안하여 합의하에 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북한은 군축과 그 이후의 평화보장문제에 대해서 비무장지대내에 중립국감시군 배치,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불가침선언, 정전상태의 평화상태선언,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미·북회담 또는 3자회담 등을 제안하였다. 이처럼 북한은 군축문제와 평화체제전환문제를 계기로 미·북회담을 추진할 의도를 나타냈다.

이처럼 남북한의 군비통제방안은 기본방향, 우선순위, 목표, 등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차이를 보였다. 남한의 방안은 점진적으로 신뢰구축을 조성한 바탕위에서 공격형무기 감축을 우선 추진한다는 목표를 지녔으며, 구체적인 군축과 그 이후의 평화보장문제는 추후에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북한의 방안은 급속한 병력우선감축과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관계약화, 평화상태전환을 위한 미·북회담 또는 3자회담 등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표 1> 1980년대까지 남북한의 군비통제 제안 비교

항 목	남 한	북 한
단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적 신뢰구축, 군사적 신뢰구축, 군축 - 단계적 개념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적 신뢰구축, 무력감축, 외국 무력 철수, 군축후 평화보장 - 단계적 개념 강조하지 않음
정치적외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체제 인정 및 존중, 지명 공격비방중상 전단살포확성기방송 중지, 신문·라디오·TV·출판물 상호개방, 서울과 평양에 상주연락대표부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적 신뢰구축 언급없음
군사적외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인사의 상호방문·교류 - 군사정보의 상호공개·교환 - 여단급이상 부대이동 및 공동훈련의 45일전 사전통보 및 참관 -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위한 국방부장관간 직통전화 설치 -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및 평화적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훈련과 군사연습 제한: 외국 군대와외 모든 합동군사훈련과 군사훈련 금지, 사단급 이상 규모 의 군사훈련과 군사연습 금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일체 군사연습을 금지, 자기 영내에서 외국군 대와의 군사연습 허용 금지, 군사 연습의 사전 통보 -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DMZ내 모든 군사인원과 장비 철수, DMZ의 평화적 이용 - 우발적 충돌방지위한 안전조치: 고위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 군사분 계선 일대 군사적 도발행위 금지
군 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격형 전력 우선 감축 - 상호동수보유원칙과 동수균형 감축방식을 통해 군사력의 상호균형 유지 - 무기감축에 따라 병력감축, 상비전력감축에 상응한 예비전력과 유사 구조의 감축 - 쌍방군사력의 최종 수준은 통일국가의 군수력 수요를 감안하여 쌍방 합의하에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력의 단계적 감축: 3~4년동안 3 단계(30만, 20만, 10만)로 나누어 실시, 병력감축에 상응하게 군사장 비도 축소·폐기, 제1단계 감축시 민간군사조직과 민간무력 해체 - 군사장비의 질적 갱신 중지: 새로운 군사기술, 장비의 도입·개발 중지, 외국으로부터 새로운 군사 기술과 무장장비의 반입 금지
외국무력철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 남한에 배치된 핵무기의 즉시 철수위한 공동 노력, 핵무기의 생산·구입 금지, 핵무기 적재 외국비행기·함선의 한 반도 출입·통과 금지 - 한반도에서 외국군대 철수위해 노력: 주한미군과 장비를 남북한 축에 상응하게 단계적으로 완전 철수, 미군철수에 상응하게 미군 기지들도 단계적으로 철폐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검증과 감시, 공동검증단과 상주감시단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축정형의 호상 통보와 검증: 무력 감축정형의 통지, 상대측 지역에 대한 호상 현지시찰에 의한 검증

2. 1990년대 남북한 군비통제 논의

남북한군비통제에 관한 실질적 논의는 사회주의권의 붕괴 및 탈냉전상황을 반영하여 1980년대 말부터 남북고위급회담이 진행되면서 가능하였다. 남북한은 1989년 2월 28일부터 1990년 7월 26일 까지 8차례의 예비회담과 2차례의 실무대표 접촉을 통해 남북고위급회담을 개최하고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다각적인 교류·협력 실시문제」를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기까지 군비통제부문에 관해 남북한은 상반되는 기존 입장을 반복해서 주장하였다. 첫째, 남한은 신뢰구축을 토대로 한 단계적 군비통제와 불가침보장방안의 설정에 주안점을 둔 반면, 북한은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의 병행추진 입장을 다시 강조하였다. 남한의 단계적 군비통제방안은 북한의 군사력우위 현실과 북한의 합의사항이행에 대한 불신에서 기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남한은 남북관계의 전반적 개선과 병행하여 그 틀속에서 군비통제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려는 입장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미·북평화협정 체결과 남북한 불가침선언 채택 입장을 견지하였다. 북한은 이러한 맥락에서 남북기본관계 개선과 별도로 남북불가침선언을 채택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북한은 급속한 군축과 외군군대철수에 많은 비중을 둔 반면, 남한은 군인사의 인적 교류와 정보교환, 검증문제를 중시하였다.

1차 남북고위급회담(1990.9.4~9.7)에서 남한은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의 토대위에서 단계적 군축을 실시하는 방안을 밝혔다. 그리

고 북한의 연형묵총리는 기조연설에서 정치적 대결상태 해소를 위한 6개항과 불가침선언 5개항을 별도로 발표하였으며, 기존에 발표했던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과 동일한 내용을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명칭으로 제안하였다. 북한은 미·북평화협정 체결과 남북한 불가침선언을 주장하고 불가침선언의 내용으로 상호무력불사용, 분쟁의 평화적 해결, 불가침경계선 확인, 상대방에 대한 외국의 침략 및 무력간섭 금지, 불가침보장을 위한 남북한 군비감축, 미군철수 등을 제시하였다.

2차 남북고위급회담(1990.10.16~19)에서 북한은 1차 고위급회담에서 제시한 불가침구성요소를 중심으로 7개 조로 구성된 「북남 불가침에 관한 선언」을 제안하였으며, 남한은 북한의 불가침선언 초안을 수용하여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을 제의하였다.

3차 남북고위급회담(1990.12.11~14)에서 남한은 남북불가침을 위해서는 남북간 기본관계 설정과 신뢰구축을 토대로 불가침보장장치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제1차 고위급회담시 제의한 군사적 신뢰구축방안을 기초로 구체적 불가침보장방안을 포함한 「남북불가침에 관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북한은 불가침보장장치가 불필요하다며,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시 제의한 「불가침선언」에 남한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을 혼합한 「북남 불가침과 화해·협력에 관한 선언」을 제의하였다.

4차 고위급회담(1991.10.22~25)시 남북한은 단일 문건의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기

로 합의하였으나, 불가침 및 군축에 관련된 양측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다.

5차 고위급회담(1991.12.10~13)에서 남한이 북한의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축의 병행추진 입장을 원칙적으로 수용하고 군사훈련참관과 상주감시체제 운영을 거부하는 북한의 입장을 받아들였으며, 북한도 구체적인 불가침 보장조치를 협의하는데 동의하는 등 양측의 타협에 의해 남북한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⁴⁾

「남북기본합의서」 가운데 남북불가침분야에 대한 것은 무력불사용(9조), 분쟁의 평화적 해결(10조), 불가침경계선(11조),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12조),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13조), 남북군사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14조) 등 6개항이었다. 특히 14조는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합의서 발효후 3개월안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대규모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할 것을 규정하였다.

남북한은 6차 고위급회담(1992.2.18~21)에서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분과위원회가 구성·운영되었다. 남북군사분과위원회는 1992년

4) 민족통일연구원, 「통일환경과 남북한관계: 1991~1992」(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1), pp. 98~101.

3월 13일 1차회담을 개최한 이후 9월 5일까지 8차례의 회의와 1차례의 위원장접촉 및 3차례의 위원접촉을 통해 불가침분야 부속합의서의 내용에 대해서 협의하였다. 그리고 7차 고위급회담(1992.5.5~8)에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됨에 따라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회담은 한차례도 성사되지 않았다.

남북군사분과위원회에서 「불가침분야 부속합의서」 채택을 둘러싸고 남북한의 입장이 대립되었다. 북한은 군사분과위원회에서 구체적 사업에 대한 실천보다는 군사적 대결상태해소 및 평화문제와 관련한 전반적 문제를 협의하여 불가침분야 단일부속합의서를 작성한 뒤, 구체적 이행·실천업무는 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할 것을 주장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주장은 불가침분야 부속합의서에서 미·북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철수에 대해 합의를 하려는 데 주안점을 둔 것이었다. 반면, 남한은 남북당사자해결원칙, 화해·불가침·교류협력의 부문간 균형추진원칙, 실천성보장원칙, 우선 합의가능한 분야부터 즉각적으로 실천에 옮긴다는 건별합의·즉시실천원칙 등을 주장하였으며, 시범사업으로 군사직통전화 설치문제를 협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남북한은 8차 고위급회담(1992.9.15~18)에서 「불가침분야 부속합의서」를 채택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무력불사용(1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2장), 불가침경계선 및 구역 설정(3장), 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4장)이었다. 그러나 북한이 주장한 내용가운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무력증강 금지, 상대

방에 대한 정찰금지, 상대방의 영공·영해 봉쇄금지, 남한이 주장한 내용가운데 서울과 평양의 안전보장문제 등에 대해서는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으며, 동 문제는 추후 군사공동위원회의 협의사항으로 남겨졌다.

「기본합의서」 및 「불가침분야 부속합의서」 채택과 군사분과위원회의 개최에도 불구하고 북한핵문제의 대두로 남북대화는 중단되었다. 한국과 미국은 1992년 24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10.8~9)에서 남북상호사찰에 진전이 없을 경우, 1993년도 팀스피리트훈련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북한이 이 발표에 반발하고 남북대화를 중단함으로써 1992년 11월 12일 개최예정이었던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무산되었다.

한편, 불가침분야 부속합의서(12조~15조)에 의해 남북한은 문서통신 및 전화문교환방법에 의해 군사직통전화를 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 군사당국자들의 통화도 하도록 하였다. 남북한은 합의서 발효후 50일 이내인 11월 6일까지 군사직통전화를 설치한다는 데 합의하고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북한이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결정을 이유로 실무회담을 무산시킴으로써 직통전화는 개통되지 못했다.⁵⁾

5) 민족통일연구원, 「통일환경과 남북한관계, 1992~1993」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pp. 95~97.

제III장 남북한군비통제의 접근방향

남북한군비통제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군비통제의 세부이행방안을 제시하는 것 보다 군비통제의 전반적인 접근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한반도의 안전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남북한군비통제를 실천에 옮기는 종합적 구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군비통제의 세부적 이행방안을 강구하기에 앞서, 미·북간 군비통제협상 방지, 군비통제와 평화체제 전환, 군비통제와 한·미안보관계의 조정, 군비통제에 대한 남북한의 인식론적 접근, 남북한간 군비통제 협상, 신뢰구축과 군축에 대한 일괄협상, 대북인센티브 제공 등과 같은 군비통제의 포괄적 접근 구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1. 미·북간 군비통제협상 방지

북한의 NPT탈퇴(1993.3.12)를 계기로 미국과 북한은 1993년 이후 일련의 미·북고위급회담을 거쳐¹⁾, 1994년 10월 21일 「미·북기본합의문」(Agreed Framework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1) 미국과 북한은 1993년 제32차(5.5) 및 33차(5.10) 북경참사관 접촉에서 북한핵문제와 관련한 북·미고위급접촉을 갖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유엔은 1993년 5월 11일 유엔안보리 결의안 제825호 4항에서 모든 회원국에게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것은 북·미직접협상의 명분이 되었다. 이후 미국과 북한은 1차고위급회담(1993.6), 2차고위급회담(1993.7), 3차고위급회담(1994.8)을 개최하였다. 민족통일연구원, 「북한핵문제와 남북관계: 전개과정 및 발전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4), pp. 45~54.

Americ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을 채택함으로써 북한핵문제의 해결과 포괄적 미·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 구도에 합의하였다.

핵문제타결후 미국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재래식 군비통제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북한은 미·북연락 사무소 개설을 계기로 미·북간 경제·사회분야의 교류·협력뿐만 아니라 정치·군사협상에서도 적극적인 입장을 보일 것이다. 미·북경수로협상과정에서 북한은 이미 미·북평화협정 체결이 미·북관계개선의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북한은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에서 주한미군철수와 미·북평화협정 체결을 우선적인 안건으로 제기하고 이를 통해 탈냉전후 북한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고자 할 것이다.

미·북간 한반도군사문제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안건이 제기될 것인가 하는 점과 어떤 대화통로가 모색될 것인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

첫째, 군비통제방안가운데 신뢰구축조치와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전방배치병력의 후방이동 등이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다. 대북핵협상을 담당하였던 갈루치 미핵대사는 1994년 1월 미상원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에서 미·북수교의 전제조건으로 휴전선에 배치한 북한군사력의 후방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²⁾

2) Testimony of Robert L. Gallucci, Ambassador Before the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Subcommittee on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December 1, 1994.

미의회는 여러차례의 한반도결의안을 통해 미·북기본합의문 타결이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신뢰구축방안을 제안하였다.³⁾ 1995년 1월 25일 미국의 민주, 공화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상원과 하원에 각각 「북핵합의에 대한 결의안」(Korean Nuclear Agreement Resolution)을 제출하였다. 이 결의안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 「의회의 인식」(sense of congress)이며, 미·북제네바합의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미대통령특사의 북한파견, 남북대화재개, 남북기본합의문 및 비핵화공동선언의 이행 등을 강조하였다. 이 결의안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포괄적 방안과 함께 특히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요 병력이동과 주요 군사훈련의 상호통보 및 감독, 비무장지대병력의 후방배치, 군요원교류 및 정보교류, 군당국자간의 핫라인 설치, 군비 및 병력의 단계적 감축과 검증 등에 대해 협의할 것을 제안하였다.⁴⁾

3) 미국은 이미 1980년대 중반에 한반도의 신뢰구축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1984년 1월 북한이 북·미평화협정 체결과 남북불가침선언 채택을 주장하자 미국무부의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윌포비츠(Wolfowitz)는 우선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로 군사연습의 사전통보, 참관인 교환,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1984년 4월 레이건 미대통령의 베이징방문시 슐츠(Schultz) 미국무장관은 중국의 외무부장관에게 비무장지대에서 병력철수 및 중장비무기 제거, 비무장지대에 대한 중립국위원단의 정기적 조사, 남북한 군사훈련의 사전통보, 군사훈련에 대한 참관인들의 상호파견 등의 신뢰구축방안을 북한에게 전달해 주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984년 10월 레이건 대통령은 유엔총회연설에서 신뢰구축이 한반도통일의 중요한 일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성화, “한반도군축을 위한 신뢰구축방안,” 이호재 편, 「한반도군축론」(서울: 법문사, 1989), p. 233.

4)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①남북정상회담 개최, ②북한핵재처리시설의 즉

그리고 제시 헬름스 미상원 외교위원장, 프랭크 머코스키 에너지위원장, 크레이그 토머스 동아태소위원장 등 미상원의원 5명은 1995년 3월 17일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9개항의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⁵⁾

또한 미하원 아태소위원회는 「미·북한간 제네바합의에 관한 공동결의안」을 의결하여 국제관계위원회에 회부(1995. 4. 5)하였다. 이 결의안은 대북경수료제공에서 한국의 중심적 역할보장을 강조하는 동시에 미·북관계격상의 조건들로 남북대화 재개, 한반도비핵화선언 이행, 군사분계선 일원의 북한군사력 감축, 미사일수출 금지 등을 제시하였다.⁶⁾ 이 결의안은 6월 말 국제관계위원회에서 통과된 뒤, 일부 수정을 거쳐 9월 18일 미하원에서 채택되었다.⁷⁾ 이 결의안은 머코스키상원 등이 상원에 제출한 비슷한 내용의 대북결의안과 통합·조정되어 11월 9일 단일안으로 상원에 상정되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⁸⁾

각 해제, ③남북상호사찰, ④남북한연락사무소 설치, ⑤남북무역 확대, ⑥남북민간인들의 여행자유 촉진, ⑦과학, 기술, 교육, 예술, 보건, 체육, 환경, 출판, 언론 등의 교류 확대, ⑧남북한간 우편, 통신, ⑨남북한간 철도와 도로의 연결 등에 관한 구체적 일정표를 만들 것을 권고하였다. U. S. House of Representatives, 104th Congress 1st Session, *Korean Nuclear Agreement Resolution*, (1995.1.25).

5) 이 결의안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①남북정상회담 개최, ②핵시설에 대한 남북상호사찰, ③남북간 연락사무소 개설, ④남북간 군사회담 개최, ⑤무역교류 확대, ⑥자유왕래, ⑦과학·기술·교육·문화·언론·스포츠 교류, ⑧우편 및 상호통신을 위한 시설 설비, ⑨남북한간 열차 및 도로망 연결 등을 제시하였다. 「중앙일보」, 1995.3.18.

6) 「동아일보」, 1995.4.7.

7) *Korea Herald*, 1995.9.20.

8) 「한국일보」, 1995.11.13.

이처럼 미국의 국무부와 의회는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군대의 이동 및 훈련에 대한 상호통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양측 병력의 후방철수, 군장비와 병력의 단계적 감축 등 한반도의 군비통제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상과 같은 미국의 요구에 대해 북한이 미·북협상에 의해 동문 제들을 해결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낼 경우, 미·북간 군사협상이 추진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북한은 미국측의 비무장지대 병력의 후방배치요구에 대해 한국군 및 미군의 후방배치와 단계적 미군철수 등을 제안할 수도 있다.⁹⁾

둘째, 미·북간 군사협상의 대화창구와 관련하여 군사정전위원회 틀밖에서 미·북간 군사접촉이 시도될 가능성이 있다. 1994년 12월 미군헬기 추락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미·북간 군사접촉과 미 정부관리의 북한방문에 의한 정치적 협상이라는 전례가 생겼다. 사건발생후 미국은 군사정전위원회의 비서장회의를 요구하였으나, 북한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북한측의 판문점대표부 대표인 이찬복 중장과 주한미군 스미스소장간에 회담이 진행되었다. 미·북간 대화가 정전위원회 틀내에서 진행되었다는 미국측 해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회담은 미·북간 군사접촉이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미국무부의 토마스 허바드(Thomas Hubbard)부차관보가 대통령특사로 북한을 방문(12.28~12.30)하여 대북협상을 벌였으며, 북한을 방문중이었던 리차드슨(Richardson)

9) 한용섭,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민족통일연구원 주최 학술회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모색」 발표논문, 1995.6.21), p. 8.

미하원의원도 협상에 참여하였다. 북한과 미국은 각각 별도의 발표문을 통해 향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적절한 형태의 군사적 접촉(forum)」을 갖기로 하였다.¹⁰⁾

미군헬기추락사건을 통해 북한은 군사정전위원회라는 공식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전위의 구성원인 한국을 배제하고 미·북장성급 접촉과 미국무부관리의 대북방문을 통해서 미·북대화의 창구를 확보하였다. 특히 미국은 미·북간 군사적 접촉을 군사정전위원회내에서의 대화로 해석하였으나 북한은 이것을 새로운 형태의 군사접촉으로 해석하였다. 앞으로 정전위체제가 무력화된 상태에서 정전협정위반사건이 재발할 경우 정전위체제와 무관하게 미·북간 군사접촉과 미·북정치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1995년 1월 평양을 방문한 릴리(James Lilley) 전 주한미대사일행에게 북한은 평화협정체결에 이르는 중간조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간조치는 미군헬기사건의 해결시 합의된 적절한 군사접촉안과도 관련이 있으며, 미·북간 군사접촉을 기구화시킨 것일 수도 있다.¹¹⁾ 또한 북한은 중간조치를 통해 미·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정치·군사회담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상호불가침, 테러국가에서 북한을 제외하는 문제,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팀스피리트훈련 영구중지 등의 문제를 논의하고자 할 수도 있다.¹²⁾

10) 「동아일보」, 1994.12.31.

11) 김영진, “조미관계와 진전,” 「世界」(일본) 1995. 4월호.

12) 남만권, “경수로문제에 평화협정 연계: 북한이 노리는 목표는 한미이간.”

한편, 북한은 정전협정을 사문화시키고 정전기구(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한편, 미·북군사접촉과 미·북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조치를 순차적으로 취해왔다. 1991년 3월 한국의 황원탁소장이 유엔군사정전위원회의 수석대표로 임명된 후, 북한은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에 참석을 거부하였다.¹³⁾ 북한은 1994년 4월 28일 북한측 군사정전위원회 대표를 철수시키고, 1994년 12월 15일에는 중국측 대표를 군사정전위대표에서 철수시켰다.¹⁴⁾ 또한 북한은 1994년 5월 24일 군사정전위를 대체할 새로운 기구로서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를 설치한 뒤, 대표부 이름으로 대령급비서장회의에 출석하여 미·북간 장성급회담을 주장했다. 북한은 이처럼 군사정전위를 무력화시키는 조치와 함께 중립국감독위원회로부터 체코대표단(1993년 4월)과 폴란드대표단(1995년 2월 28일)을 철수시킴으로써 중립국감독위원회도 무력화시켰다. 이로써 정전협정의 양대 기구인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그리고 북한은 미국과 경수로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인

미군철수, 「민족정론」, 1995년 6월호, p. 49.

- 13) 한국과 미국은 1991년 3월 합의에 의해 유엔군측 군사정전위 대표를 한국군 장성으로 교체하였다. 북한은 한국전쟁동안 한국군이 유엔군의 일원이 아니었으며, 정전협정체결에 반대했고, 한국군에 대한 작전권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한국군장성이 수석대표인 군사정전위 회담에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다. Kim Byung Hong, "North Korea's Perspective On The U.S.-North Korea Peace Treaty,"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vol. 13, no. 4 (Winter 1994), pp. 87~88; 황원탁 소장은 1995년 9월 1일로 임기가 만료되었으며, 후임에 한미연합사 부참모장인 이석복 육군소장이 임명되었다. 「한국일보」, 1995.8.26.
- 14) 통일원, 「월간 북한동향」 12 (서울: 통일원, 1994), pp. 110~111 참조.

1995년 5월 3일 판문점대표부의 성명을 통해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의 북측 사무실을 폐쇄하고 공동경비구역의 북측지역에 대한 중감위대표 및 미군의 출입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하였다.¹⁵⁾ 북한이 이처럼 정전위체제를 무력화시킴에 따라 정전협정은 사실상 비무장지대의 관리에 대한 사항만 남게 되었다. 북한은 한편으로는 정전위체제를 무력화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비무장지대에서 정전위협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¹⁶⁾ 정전위대신 미·북간 새로운 군사협약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측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미국은 유보적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군사협상창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탄력적인 입장을 보였다. 개리 럭(Garry Luck) 주한유엔군사령관은 5월 12일 이양호 국방부장관에게 서신을 보내 북한측의 비무장지대내 불법행동을 협의하기 위해 미·북장성급접촉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양호 국방장관은 유엔측대표는 황원탁소장을 제외한 군사정전위원회대표 전원이어야 하며, 회의장소는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이어야 하고, 의제는 정전협정 위반사항에 국한되어야 하며, 실제회담은 북한의 명시적 동의를 받은 뒤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¹⁷⁾

15) 「한국일보」, 1995.5.4.

16) 북한은 1994년 4월 29일 판문점공동경비구역의 북측지역에 철모와 개인화기로 무장한 병력을 40여명 배치함으로써 병력의 초과투입과 함께 무력시위를 감행하였고, 4월 30일에는 북한공군기들의 휴전선근접지역 비행이 있었다. 통일원, 「월간 북한동향」 5 (서울: 통일원, 1994), pp. 47~82; 그리고 1995년 4월 19일과 4월 23일에는 무장한 북한군이 비무장지대내에서 정찰활동을 벌인 바 있으며, 5월 9일에는 비무장 10여명이 군사분계선내에서 정찰활동을 했다. 「한국일보」, 1995.5.11.

17) 「중앙일보」, 1995.5.13.

그리고 5월 19일 주한유엔사 스미스소장은 북한 이찬복중장에
 5월 23일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장성급회의를 갖자는 제
 안을 했다. 미국측의 제안에 의하면 유엔측 대표단은 군사정전위
 수석대표인 황원탁소장을 제외하고, 스미스소장을 대표로 하며
 한국, 미국, 영국 및 캐나다대표 1명 등 4명으로 구성되었다.¹⁸⁾
 그러나 북한은 5월 24일 미국측 제안을 거절하는 대신 북한과 미
 국만의 장성급접촉을 제안하였다.

1995년 9월 19일부터 26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김영남외교부
 장관 강석주 외교부제1부부장, 북한인민군 판문점 수석대표인 이
 찬복 중장 등을 면담한 셀리그 해리슨(Selig S. Harrison)은 미국이
 5월 19일 이후 추후 장성급회담을 위한 실무협의체(mutual 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여 9월 12일까지 열
 차례의 영관급회의가 있었으며, 9월 21일 장성급회담을 개최하기
 로 하였으나 무산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해리슨에 의하면, 북한은
 미·북간에 「상호안보협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남북한간에는
 군사공동위원회를 병행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한했다고 한
 다.¹⁹⁾

미국의 미·북군사접촉 시도는 군사정전위원회를 무력화시키려는
 북한에 대해 이 문제를 정전위 틀안에서 풀기위한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전위 틀내에서 미·북장성급 접촉」이라는 미

18) 「중앙일보」, 1995.5.22.

19) 셀리그 해리슨(Selig Harrison) 카네기재단 연구원의 인터뷰. 「중앙일보」,
 1995.9.8.

국측의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식은 실질적으로 정전위 틀밖에서 미·북간 군사접촉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측 제안은 기존의 정전위틀의 고수나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정전위체제가 유명무실화된 현실과 미·북대화를 선호하는 북한의 입장을 감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불안정한 상황을 방치하기보다는 정전위체제를 다소 변형하더라도 북한과 직접 대화채널을 유지하고자 하는 미국의 입장변화를 나타낸다.

이처럼 미·북관계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한반도군비통제문제는 미·북간 중요 현안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과정에서 북한과 미국간에 별도의 군사협상통로가 모색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남한이 배제된 채 미국과 북한간 한반도군사문제 및 군비통제에 대한 협상이 진행된다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미간 긴밀한 정책협조를 통해 남북한협상에 의해서 한반도군사문제와 군비통제에 대한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아울러 남북한군비통제에 대한 포괄적 협상들과 대북유인수단을 마련하여 남북한협상에 의한 군비통제를 추진해야 한다.

2. 군비통제와 평화체제 전환

한반도평화체제 전환은 평화체제의 개념, 평화체제 전환의 형식, 평화체제전환의 당사자, 유엔군사령부의 해체 등과 같은 복잡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평화체제전환에 관련된 이러한 사안

들은 남북한군비통제의 협상주체와 추진구도, 군비통제의 검증 등과 연관되어 있다.

첫째, 남북평화체제 전환은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평화협정 체결, 평화보장장치 마련 등을 포함하는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이다. 평화체제는 남북한 및 관련 국가간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절차를 제도화한 것으로 일종의 새로운 레짐(regime)²⁰을 건설하는 것이다. 따라서 평화협정의 체결문제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신뢰구축을 통한 주변여건 조성 과 합의사항의 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평화체제를 건설하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군비통제과정과 관련되어 있다. 어느 시점에서 어떤 형식으로 평화체제전환을 강구하느냐 하는 문제는 군비통제의 범위와 속도, 시점 등과 관련되어 있다.

둘째,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가 하는 평화체제전환의 형식문제가 있다. 2차대전후 교전당사자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고도 일정기간이 경과함

20) 레짐(regime)은 행위자들의 상호행동에 대한 기대가 서로 수렴하게 되는 일련의 명시적이거나 암시적인 원칙(principles), 규범(norms), 규칙(rules), 정책결정절차(decision-making procedures)이다. 원칙은 사실, 인과관계, 정확함 등에 대한 신념이다. 규범은 권리와 의무차원에서 정의되는 행위의 기준이다. 규칙은 행동에 대한 특정한 규정과 금지이다. 정책결정절차는 집단적 선택을 결정하고 이행하는 관행들이다. 레짐은 단기적 이해관계의 고려에 의한 일시적 정책타협과는 다르며 장기적이고 예측가능한 상호 행위유형을 제도화시킨다. Stepan D. Krasner, ed., special edi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36, no. 2 (Spring 1982), pp. 186~187.

에 따라 정상관계가 회복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간에도 반드시 평화협정체결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 조약의 명칭이나 전쟁종료방식에 관한 원론적 원칙에 지나치게 구애될 필요는 없으며,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문제라는 것이다.²¹⁾ 이러한 입장은 남북간에 이미 체결된 「기본합의서」 및 「불가침분야 부속합의서」가 성실하게 이행될 경우 평화협정의 체결을 거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남북평화체제가 실현된다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²²⁾ 이러한 방식에 의해 별도의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기본합의서」 준수에 의해서 평화체제가 정착된 것으로 간주될 경우, 기본합의서의 관련 조항을 수정하거나 부속합의서를 첨부하는 방법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기본합의서」의 준수 및 신뢰구축을 강조하는 평화체제전환방안은 「기본합의서」 및 「불가침분야 부속합의서」에 입각한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다. 신뢰적 구축을 통한 평화체제 전환이 강조될 경우,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 군사관련 정보의 교환 및 군인사의 교류 등과 같은 군사적 신뢰조치가 남북한 현안으로 부각될 것이다.

한편,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명시적으로 평화협정의 체

-
- 21) 1979년 이스라엘과 이집트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된 것은 예외적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유병화, “통일지향적 남북한관계의 법이론 연구,” 통일원,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실천과 제도화연구」(서울: 통일원, 1990), pp. 158~160.
- 22) 안병준, 「탈냉전기의 국제정치와 한반도통일」(서울: 법문사, 1993), pp. 399~401.

결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²³⁾ 남북간 평화협정이 체결될 경우 그 내용에는 남북간 적대관계 및 전쟁상태해소, 상호불가침 및 무력행사 포기, 경계선의 상호존중, 분쟁의 평화적 해결, 군비통제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신뢰구축을 통한 점진적 평화체제전환방식을 통하든지, 평화협정체결을 통한 명시적 평화체제전환방식을 통하든지 평화체제전환에는 주한미군, 유엔사해체, 미국의 핵우산, 군사적 신뢰구축 등과 같은 군비통제 관련사항들이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평화체제전환에 대한 논의없이 군비통제만이 별도로 논의되기는 힘들며, 평화체제전환의 기본구도가 마련되는 맥락에서 군비통제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평화상태로의 전환문제는 협상당사자와 관련된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북한은 1974년 3월 25일 이전까지는 남북간 평화협정체결을 주장하였으나, 1974년 3월 25일 이후 휴전협정당사자가 유엔군사령관이며 유엔군사령관을 미국측이 담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였다. 한편 미국 카터행정부의 키신저 국무장관이 1976년 8월 미·남한·북한간의 3자회담을 제안한 바 있으며, 1979년 7월 1일 박정희대통령과 카터 미대통령은 미·남한·북한간 3자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북한은 1984년 1월 10일 북·미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남북간 불가침선언을 채택한다는 이중구조로 구성된 3자회담을 제안한 바

23) 김명기, 「남북한연방제통일론」 (서울: 탐구원, 1991), pp. 144~145.

있다. 미·북경수로협상과정에서 이미 북한은 경수로협상과 미·북평화협정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차례 주장하였으며²⁴⁾, 북·미관계개선 과정에서 북·미간 평화협정체결문제를 강도높게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미·북평화협정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전쟁동안 미국이 북한에 대해 단독으로 전쟁선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의회가 미·북평화협정을 비준할 법적 근거도 희박하다. 그러나 미·북연락사무소가 개설되고 미·북간 정치·군사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미국이 한반도평화체제전환에 대해서 신축적인 입장을 보일 수도 있다. 만약 한국이 배제된 상태에서 미·북평화협정이 체결될 경우, 한국이 이를 준수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비무장지대의 관리 및 협정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와 협상 등과 관련하여 평화협정을 이행할 권한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위임된다면, 한국이 한미연합사령부의 일원이기때문에 한국도 이 평화협정을 이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²⁵⁾

평화협정체결의 당사자문제는 군비통제의 당사자문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북한은 남한과 「남북기본합의서」와 「불가침분야 부속합의서」를 채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북평화협정을

24) 북한의 외교부대변인 담화, 1995년 2월 28일, 1995년 4월 19일; 그러나 북한은 북·미준고위급회담(1995.5.20~6.13, 쿠알라룸푸르)에서는 경수로 지원문제와 평화협정체결문제를 연계시키지는 않았다.

25) Zachary S. Davis, Larry A. Niksch, Larry Q. Nowels, *Korea: Procedural and Jurisdictional Questions Regarding Possible Normalization of Relations With North Korea*, p. 18.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반도군비통제문제에 대해서도 미·북간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할 것이다. 평화협정문제가 미·북중심으로 해결된다면, 그 과정에서 한반도군비통제도 미·북협상에 의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남북당사자원칙에 입각하여 남북평화협정체결을 위한 구도를 만들면서 동시에 이와 병행해서 남북한의 주도에 의해서 남북한군비통제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넷째, 평화체제 전환은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 북한은 1954년 제네바회의이후 유엔사는 유엔과 무관한 기구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1973년 UNCURK 해체 이후 유엔사해체를 위해 노력하였다. 북한은 1975년 11월 유엔총회에서 유엔사해체 및 유엔깃발하의 주한외국군철수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남한은 1970년대 초반까지는 유엔사 존속 입장을 고수하였으나, 1970년대 중반부터는 유엔사를 대체할 기구가 마련된다면 유엔사해체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배경하에 1975년 11월 포드행정부는 정전협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유엔사를 해체할 수 있다는 결의안을 유엔총회에 제출하였다.²⁶⁾

새로운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휴전협정의 이행·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유엔사는 해체되고, 그대신 새로운 평화보장장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²⁷⁾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로는 유엔평화유지군

26) 백진현, “남북한 평화체제구축의 과제와 문제점,” (한국정치학회, 광복 50주년기념 남북한관계 학술대회, 「분단 50년과 통일의 전망」, 1995.11.11)

27) 유엔군사령부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300여명의 행정요원들로 구

이나 중립국감시단, 남북한공동관리방안이 고려될 수 있으나, 남북간 신뢰구축과 평화체제의 정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남북한의 공동관리방안이 바람직하다.²⁸⁾

한편 새로운 평화보장장치는 군비통제의 검증 및 보장기구와 관련되어 있다. 새로운 평화보장장치는 실제로 남북한군비통제를 관리하고 검증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간 공동관리방식에 의해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관리하고 이 기구가 남북한 군비통제를 검증·감독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군비통제와 한·미안보관계 조정

남북한군비통제는 한·미동맹관계, 주한미군의 역할,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한·미합동군사훈련 등 한·미안보관계에 관련된 사안들에 대한 정책조정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남북한군비통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미안보관련 사안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조정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첫째, 미·북관계 개선과 남북한군비통제가 추진되더라도 한·미상

성된 유엔군사령부의 역할이 미미하며 북한이 유엔회원국(1991.9.17 유엔가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평화협정체결 이전이라도 그 해체방안이 신중하게 검토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유병화, “통일지향적 남북한관계의 법이론 연구,” pp. 166~167; 단, 평화협정체결전에 유엔사가 해체된다고 하더라도 유엔사가 정전협정의 체결당사가 아니며 단지 정전협정의 준수·집행을 책임지는 관리기구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정전협정이 폐기되는 아니며, 새로운 정전협정관리기구가 구성되게 된다.

28) 백진현, “휴전협정체제의 대체에 관한 연구,” 통일원,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실천을 위한 모색」, (서울: 통일원, 1991), pp. 136~142.

호방위조약은 한반도의 안전과 동북아의 평화를 유지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냉전시대에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는 역할을 했다면, 탈냉전시대에는 동북아의 질서유지를 위한 안전판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미·중국간 국교정상화로 인해 미·대만상호방위조약이 폐기된 것과는 달리²⁹⁾ 미·북 국교정상화가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지속되어야 한다.

둘째, 주한미군문제는 남북한군비통제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가 될 것이다. 남북한의 전력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주한미군의 전력을 남한의 전력에 포함시키는 여부가 논란이 될 수도 있다.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1953.10.1)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미·북관계 개선이나 평화체제전환문제와는 무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9)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대만상호방위조약에는 “일년의 통고기간이 지난 뒤, 조약의 한쪽 당사자는 조약을 종식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미국의 카터행정부는 동 조항에 근거하여 1979년 미·대만상호방위조약이 일년뒤 종식됨을 대만에게 통고하였다. 미의회는 1979년 의회의 인식결의안(a sense of congress resolution)을 통해 동 조약의 연장에 대해서 의회와 행정부간 정책협약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미상원은 미국과 다른 나라와의 상호방위조약의 종식을 위해서 상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상원의 인식결의안(a sense of the senate resolution)을 통과시켰다. 또한 골드워터(Barry Goldwater)상원의원은 상원의 동의없이 동조약을 폐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방법원에 제소하였다. 연방지방법정은 골드워터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의 판결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이 판결은 단지 미·대만상호방위조약의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함으로써 미국과 다른 나라와의 상호방위조약의 폐기시 의회와의 협이가 필요한 여지를 남겨 놓았다. Zachary S. Davis, Larry A. Niksch, Larry Q. Nowels, *Korea: Procedural and Jurisdictional Questions Regarding Possible Normalization of Relations With North Korea*, p. 19.

하고 주한미군의 철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 한·미간 어떤 협정에도 구애되지 않고 미행정부의 단독 결정으로 행해질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전쟁이후 1970년대 중반까지 점진적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해왔다. 카터행정부는 주한미군철수 계획을 취소하였으나 이것은 법적인 문제때문이 아니라 미의회의 정치적 반대때문이었다.³⁰⁾ 부시행정부는 아무런 법적 제약도 받지 않고 1990~1992동안 7,000명의 미군을 한국에서 철수하였다.

클린턴행정부의 등장이후 북한핵문제로 중단되었던 주한미군의 추가감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1995년 2월 발표된 미국방부의 「동아시아전략보고서」(EASR)에 의하면, 클린턴행정부는 부시행정부에 의해 결정된 동아시아주둔 미군에 대한 3단계 감축계획에 관한 「동아시아이니셔티브 I」(1990.4)과 「동아시아이니셔티브 II」(1992.10)를 폐기하고 2000년까지 주한미군을 포함하여 아시아주둔 미군병력을 현재의 10만명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임을 밝혔다.³¹⁾

북한은 대남혁명의 선결조건으로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해 왔으며 미·북관계개선 과정에서 양국간 적대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가시적 조치로 주한미군이 철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더욱이 북한은 주한미군철수를 북·미간 평화협정체결문제와 연계하여 제기할 것이다.

30) Larry A. Niksch, "U.S. Troop Withdrawal from South Korea: Past Shortcomings and Future Prospects," *Asian Survey* (March 1981), pp. 325~341.

31) U. S. Department of State, *United States Security Strategy for the East Asia-Pacific Region*, (February 1995).

그런데 북한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대미관계개선의 중요한 목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지만, 공식적·비공식적 경로를 통해서 주한미군의 전면철수가 아니더라도 단계적 철수 및 미군철수계획의 발표를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 왔다.³²⁾ 북한이 주한미군철수가 단기간내에 이루어지기 힘든 문제이며, 주한미군이 대북억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동북아지역의 안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도 있다. 또한 북한은 주한미군이 남한의 군사력증강 및 북침을 견제함으로써 북한체제보장의 안전판이 되고 있다고 인식할 수도 있다.³³⁾ 1995년 9월 북한을 방문한 해리슨카네기 재단 연구원에 의하면, 북한은 주한미군의 급격한 감축이나 철수가 한국 및 일본의 과도한 대응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며,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중국의 군사현대화를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³⁴⁾ 그리고 북한은 주한미군의 존재를 묵인하는 대가로 미국 및 한국으로부터 다른 사항의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³⁵⁾

32) 북한이 1993년 4월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함께 발표한 「4개대남요구사항」에 의하면, 미군철수가 아니라 “남조선에서 미국을 철수시킬 위치를 표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일성은 1994년 재미언론인과의 인터뷰에서 남북한이 10만명으로 병력을 감축한 뒤 자체적으로 방위할 수 있을 때까지 미군의 주둔을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영삼대통령각하, 나도 민족보다 더한 우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 1994년 6월호, p. 38.

33) 이철기, “통일시대를 위한 한반도 군비통제 및 군축의 새로운 방향 모색,” (한국정치학회, 광복 50주년기념 남북한관계 학술대회, 「분단 50년과 통일의 전망」, 1995.11.11), p. 17.

34) 셀리그 해리슨 카네기재단 연구원의 인터뷰, 『중앙일보』, 1995.9.28.

35) 김창수, “미·북관계 개선에 따른 한·미안보협력 조정방향,” 『통일연구논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남북한군비통제가 추진되더라도 주한미군은 한반도의 안정과 균형을 유지하는 세력균형자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한미군은 냉전시대에 북한과 소련,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수행하는 역할을 했으나, 탈냉전상황에서 중국의 패권화와 일본의 군사화, 러시아의 개입 등을 억제할 수 있는 균형자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한미군의 후방배치나 점진적 감축계획의 발표, 역할의 변화 등은 남북한군비통제와 동북아안보상황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구도 속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군의 작전통제권문제도 남북한군비통제와 관련하여 한·미간 정책협조가 필요한 부문이다. 북한은 한국군이 작전통제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근거로 남한이 미국의 군사적 속국이며 군축협상 상대로서의 자격을 결여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확보하는 것은 대북군비통제협상에서 남한의 입지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한국전쟁발발후 한국군의 작전지휘권(command authority)은 1950년 7월 14일자로 유엔군사령부에 이양되었으며, 작전지휘권은 1954년 11월 17일 한·미합의의사록에 의해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 authority)으로 축소되었다. 1978년까지 유엔군사령관이 한국군과 주한미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1978년 11월 설립된 한·미연합사령부가 동 작전통제권을 위임받았으며, 유엔군은 군사정전위구성과 판문점내 공동경비구역의 관할권만

보유하게 되었다.³⁶⁾ 1991년 3월 25일 한국군 장성이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로 임명되었으며, 1991년 10월에는 미2사단이 담당하던 판문점내 비무장지대 경비책임과 경제초소(GP)를 한국군이 인수하였다. 1992년말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겸직하고 있던 지상구성군 사령관에 한국군장성이 보임되었으며, 1994년 12월 1일자로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보유하고 있던 평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 이양되었다.

그런데 평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이양에 따른 후속조치로 유사시 한반도에 급파되는 미군 병력 및 장비의 보호와 수송임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군 2군사령관이 「연방후방지역 작전조정권」(CRAC)임무를 부여받았다. 「연방후방지역 작전조정권」은 엄밀한 의미에서 작전통제권과는 다르며, 병력 및 장비의 수송·보호에 관한 관할권을 의미한다. 1994년 한·미연합사령관이 CRAC에 대한 전시통제권을 행사하도록 하였으며, 1995년 11월 17차 한미군사 위원회회의(MCM)에서는 한·미연합사령관이 2군의 「연방후방지역 작전조정권」에 대해 평시통제권까지 행사하도록 되었다.³⁷⁾

이처럼 평시작전권의 한국군이양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일부 영역에 대해 한·미연합군사령관의 권한이 다시 부활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앞으로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될 경우, 한·미간 전시작전협조를 위해 「전시연합기획단」이나 「전시연합사령부」와

36) 제성호, “한군군 작전권과 그 환원문제,” 국토통일원, 「군축 및 군비통제에 관한 연구」 (서울: 국토통일원, 1989), pp. 252~263.

37) 「중앙일보」, 1995.11.3.

같은 조정체계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군의 전시작전권이 회복될 경우 정보 및 조기경보체계분야에서의 한국군의 능력이 향상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한·미합동군사훈련도 남북한군비통제에서 중요한 의제가운데 하나이다. 북한은 TS훈련을 비롯한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중지를 군비통제방안의 주요 사안으로 주장해 왔다. TS훈련시 북한에서는 전시동원령이 선포되어 전직장이 휴업상태에 돌입하며, 기름부족상황에서도 대응군사훈련을 하는 등 TS훈련이 북한에게 군사적·경제적으로 커다란 부담이 되어 왔다.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채택이후 남북화해·협력분위기 조성을 위해 1992년 TS훈련이 중단되었었다. 그러나 남북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북한핵문제가 대두됨으로써 1993년 1월 93년도 TS훈련재개가 발표되었으며, 북한은 이를 구실로 핵통제공동위원회를 포함한 남북대화를 전면 중단하였다. 핵문제와 관련한 미·북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94년도 TS훈련이 실시되지 않았으며, 95년도 TS훈련도 실시되지 않았다.

앞으로 TS훈련의 영구중단은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와 배치제한지역설정 등 운용적 군비통제조치와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4. 군비통제에 대한 남북한의 인식론적 접근

남북한의 군비통제에 있어서 세부적인 기술적 문제에 대한 견

해차이의 절충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신뢰구축, 군비통제, 군비축소, 안보개념에 대한 상호 인식론적 차이를 줄이는 것이다. 남한은 유럽 및 미국의 군비통제이론과 경험을 수용하여 신뢰구축을 기초로 하는 군비통제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군비통제방안은 1920년대 유럽의 군축이론에 토대를 두고 있다. 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신뢰구축의 필요성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축우선입장과 주한미군철수 및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지 등 전제조건을 중시하고 있다.

남북한 군비통제협상을 위해서는 남북한의 전문가들간에 안보개념에 대한 인식의 공통분모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인식론적 공동체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³⁸⁾ 군비통제에 대한 남북한의 인식론적 차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노르웨이나 스웨덴,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제3국에서 남북한 군비통제실무자와 학자, 전문가들이 모여 비공개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비공개워크숍은 군비통제의 역사와 사례, 개념, 기술적·절차적 문제 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군비통제협상에서 접근방식상의 차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국제기

38) James Macintosh, "Inter-Korean CBMs and Arms Reduction: The Conventional Forces Dimensio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fty Years of National Independence: Past, Present, and Future of National Security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June 16~17, 1995), p 6.; 인식론적 공동체(epistemic community)란 "특정 영역에서 전문지식과 능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관련 영역이나 이슈분야에서 권위있는 주장을 하는 전문가들의 초국가적인 연계망"을 의미한다. Peter M. Haas, "Introduction: Epistemic Communities and International Policy Coordin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6, no. 1 (Winter 1992), p. 3.

구나 제3국, 연구기관 등을 통해 북한의 연구기관 및 관련 전문가들에게 군비통제관련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북한관련자들의 지식획득을 지원할 수도 있다.³⁹⁾

5. 남북한간 군비통제 협상

남북한군비통제의 협상주체는 가장 민감한 문제다. 남북한군비통제의 주체는 당연히 남북한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남북대화를 거부하고 미·북간 군사회담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미국과 북한, 남북한,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간 3가지 대화창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은 미·북간 고위급회담에서 논의되었으며, 남한은 제3자입장에서 한·미간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앞으로 군비통제에 있어서 북한과 미국간에 실질적 대화가 진전되고 남한은 방관자적 위치에 놓이게 될 가능성을 방지해야 한다. 특히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은 미·북연락사무소 개설 이후 주한미군철수문제와 평화협정체결문제, 미·북간 직접군사접촉을 주장할 것이다. 또한 미국도 정전체제의 무력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비무장지대에서의 돌발사태관리를 위해서 북한과의 대화통로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북한과 미국이 남한을 배제하고 공식·비공식적으로 군사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39) Chung-in Moon, *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Domestic Perceptions, Regional Dynamics, International Penetrations*, pp. 162~163.

한편, 미·북간 회담과 남북한회담이 병행추진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⁴⁰⁾ 북한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3자회담은 사실상 미·북 회담과 남북회담을 병행추진하는 방식이다. 북한은 남북간 정치·군사회담을 개최하는 한편, 주한미군문제 및 평화체제전환과 관련하여 미·북회담을 병행 개최할 것을 주장해 왔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2가지회담을 병행추진할 경우, 두회담의 안건과 추진일정 등을 조정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북한핵문제의 해결과정에서 나타났듯이 북한은 「主미·북대화 從남북대화」 전략에 입각하여 미·북간 군비통제협상에 우선순위를 두고 남북간 군비통제협상은 이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조건충족차원에서 추진할 것이다. 따라서 미·북간 군비통제협상과 남북간 군비통제협상을 이원적으로 병행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미국과 북한, 남한이 동일한 자격으로 동시에 참여하는 3자회담방식이 있을 수 있다. 미국이 주한미군의 주둔, 미군의 전 시작전권 보유,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군의 군사장비 및 군사정보 의존, 동북아에서 미군의 역할 등을 근거로 남북한군비통제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이집트간의 대화를 중재한 캠프데이비드(Camp David)협정의 예와 같이 남북간 협상을 중재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도 있다.⁴¹⁾ 남북한과 미국이 동

40) 1995년 9월 북한을 방문한 셀리그 해리슨 카네기재단 연구원에 의하면 북한은 북·미간 「상호안보협의위원회」 운영과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병행추진방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중앙일보」, 1995.9.28.

41) 캠프데이비드협정(1978.9)은 미국과 이스라엘, 이집트간 중동평화에 대한 포괄적 평화정착방안이었다 이를 토대로 이집트·이스라엘간 평화조약(1979.3)이 체결되었다. 캠프데이비드협정의 배경과 관련국의 입장에 대

일한 지위에서 동일한 협상테이블에 참여하는 3자회담이 그럴듯한 명분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자간의 입장 및 관심사항의 차이로 인해 실현가능성에는 상당한 의문이 있다.

한편 미·북협상과 남북협상이 동시에 병행추진되면서 합의사항을 3자가 공동합의하는 2중구조형태로 3자회담이 추진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미·북대화와 남북대화, 3자회담의 안건이 상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미·북대화에서는 주한미군의 후방배치와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계획발표 등이 주요 안건이 될 것이다. 이러한 3자회담방식이 채택될 경우, 3자간의 상이한 입장을 조정하고 상이한 이해관계의 절충점을 찾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경우에도 남북회담의 중요성을 격하시키려는 북한의 의도를 저지하기가 힘들 것이다.

남북한군비통제의 가장 바람직한 방식은 남북한이 직접 협상을 진행하고 미국이 배후에서 이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남북한은 당사자해결원칙에 입각하여 군비통제의 전반적 사항에 대해서 협상을 진행하고 미국은 북한에게 남북한간 직접 대화가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은 매 사안마다 긴밀히 협조해야 할 것이며, 특히 주한미군의 역할과 감축

해서는 다음을 참조하기 바람. William B. Quandt, *Camp David* (Washington, D. C.: Brookings Institution, 1980); 캠프데이비드협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기 바람.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vol. XVII, no. 6 (November 1978), pp. 1466~1469; 이집트-이스라엘 평화조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기 바람.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vol. XVIII, no. 2 (March 1979), pp. 362~366.

계획,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 등과 관련해서는 한·미간 긴밀한 정책협조가 필요할 것이다.

남북한 직접 협상에 의한 군비통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엔 총회나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통해서 한반도문제의 남북당사자해결원칙을 확인할 수도 있다. 유엔의 한반도결의안은 평화체제전환과 한반도군비통제에 관해 남북한당사자원칙을 강조하고 주변국들이 이를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G7회담에서 남북당사자원칙이 공론화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전쟁 16개참전국들이 한반도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남북당사자원칙에 의한 평화적 해결이 바람직하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⁴²⁾

한편, 남북한간 직접 군비통제협상을 위해서는 남북한간 협력안보⁴³⁾ 및 공동안보개념⁴⁴⁾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을 남북

42) Larry Nicksch CRS연구원 초청 간담회, 1995.9.28, 민족통일연구원.

43) 협력안보는 집단안보체제와 달리 가상 적을 상정하지 않으며 구성국간 군사동맹에 기초하지도 않는 반면, 공동안보문제에 대해서 협력하며,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Ashton B, Carter, William J. Perry and John D. Steinbrunner, *A New Concept of Cooperative Security* (Washington, D. 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92), pp. 7~10; Jane E. Nolan, *Global Engagement: Cooperation and Security in the 21st Century* (Washington, D. 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94), p. 5.

44) 공동안보는 군사적 안보와 함께 경제, 인권, 환경, 자원 등 비군사적 영역에서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문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남북한과 같이 동일한 생태계조건속에서 살고 있는 경우 이러한 공동안보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Andrew Mack,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Problems and Prospects,"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vol. XI, no. 2 (Summer 1992), p. 31.

한 직접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군사력경쟁을 통한 대결 및 억지에서 벗어나서 갈등을 관리·규제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남북공존과 상호의존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6. 신뢰구축 및 군축에 대한 일괄협상

유럽의 군비통제는 역사상 보기드문 성공적인 군비통제협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유럽의 군비통제협상은 크게 보면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주로 하는 조치들과 군사력감축을 이행하는 두 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다. 1975년 헬싱키최종합의서에서 군사훈련의 통보, 참관, 정보교환 등에 대한 신뢰구축이 합의되었으며, 1986년 스톡홀름협약에서 보다 광범위한 형태의 신뢰안보구축조치가 취해졌고, 1990년 파리헌장에서는 국방예산공개, 분쟁방지센터 설립 등 신뢰안보구축 조치가 더욱 확대되었다. 그리고 군비축소는 MBFR(Mutual and Balanced Force Reduction, 1973~1989)이 실패한 뒤, 1990년 재래식무기감축협상(CFE)이 타결됨으로써 탱크, 장갑차, 야포, 공격용헬기, 전투기 등 재래식무기에 대한 감축이 실현되었다.⁴⁵⁾

유럽의 군비통제가 성공적일 수 있었던 것은 기술적인 세부사항중심으로 신뢰구축에 대한 타협, 위협인식의 공유, 계획된 침략보다는 우발적 충돌로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 「나

45) 이서항, “군축협상의 사례분석과 남북한 군축전망,” 함택영 외, 「남북한 군비경쟁과 군축」, pp. 244~258.

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간의 군사력 균형,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라는 군사동맹체제속에서 협상진행, 상호실체 인정 및 내정불간섭,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분야에서 교류·협력 증진 등과 같은 상황이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⁴⁶⁾

유럽의 성공적인 군비통제경험이 남북한군비통제에도 여러가지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유럽의 상황과 남북한의 상황간에는 여러가지 구조적 차이점들이 있다. 우선 남북한은 위협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우발적 무력충돌보다는 상대측의 계획된 의도적 공격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남북한은 군사력평가에 있어서도 상이한 입장을 지니고 있으며, 군사력평가에 대한 공통된 기준을 결여하고 있다. 남북한은 유럽과 같은 집단안보체제가 아니라 각각 비대칭적인 양자적 동맹관계에 의존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남북한은 군사적으로 직접 대치하고 있으며, 상호실체인정과 체제공존을 현실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유럽의 군비통제경험을 고려하면서도 한반도의 특수성을 고려한 포괄적 군비통제 협상이 필요하다.⁴⁷⁾

물론 남북한과 같이 상호불신과 군사적 대립이 구조화된 상황에서는 시범적 신뢰조치를 통해서 군비통제에 대한 상호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상호학습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단순히 신뢰구축조치만을 실행한다고 해서 군비통제가 자동적

46) 안병준, “한반도에 있어서 군비통제와 신뢰구축조치의 제 쟁점,” 안병준·문영일, 「한반도의 군비통제: 쟁점과 대안」 (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994), pp. 43~45.

47) 문정인, “남북한 신뢰구축: 그 가능성과 한계,” 함택영 외, 「남북한 군비 경쟁과 군축」, pp. 208~212.

으로 보장되는 아니다. 또한 신뢰구축과 군축은 동일한 연장선(continuum)상에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리고 신뢰구축의 누적적 축적이 자동적으로 군축으로 질적 도약을 하는 것도 아니다. 뿐만 아니라 군비증강은 군사적 공격이나 방어를 위한 군사적 목적 뿐만 아니라 정치·외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측면을 지니고 있기때문에 군비경쟁중지 및 군축을 위한 정치적 결단이 선행되지 않는 한 신뢰구축이 자동적으로 군축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소련이 군축에 동의한 이유가 서방국가와의 신뢰구축의 결과가 아니라 군비경쟁을 지속할 정치·경제적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점도 반드시 신뢰구축이 조성된 후에 군축이 진행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7. 대북인센티브 제공

군비통제는 군사적 차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경제구조와 정치체제의 성격, 국가전략의 우선순위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군비통제는 군비경쟁을 중지내지 역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국들의 군비경쟁의 성격과 관련되어 있다.⁴⁸⁾ 남북한의 군비경쟁은 세계적 차원의 안보와 동북아차원의 안보, 한반도의 군사력 상황 등과 같은 군사안보적 차원의 문제일뿐만 아니라 남북한 분단구조,⁴⁹⁾ 남북한의 국내정치구조, 남북한의 산업화구조

48) 함택영, “남북한 군비경쟁 및 군사력 균형의 고찰,” 함택영 외, 「남북한 군비경쟁과 군축」, pp. 3~5.

49) 남북한 군축과 분단구조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기 바람. 백

등과 관련되어 있다.

남북한의 군비경쟁은 세계적 차원의 냉전구조의 영향일 뿐만 아니라 남북한 자체의 대립과 경쟁구조에 바탕을 두고 있다. 미·소냉전체제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간 군비경쟁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은 남북한의 군비경쟁이 자체의 재생산구조를 가지고 지속되어 왔음을 입증한다.

남한의 경우 국제적 군비감축추세와 민주화로 인한 군부의 정치적 역할 축소, 사회·복지분야의 중요성 등에도 불구하고 국방비는 감소되지 않고 있으며 1995년 현재 GNP의 3.3%, 예산의 22.1%에 이른다.⁵⁰⁾ 북한의 군사비지출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⁵¹⁾ 북한의 군비지출이 북한경제에 막대한 부담이 되고 있으며, 북한의 에너지난과 경공업제품부족을 심화시키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과도한 국방비지출에서 기인하는 북한경제의 구조적 침체에도 불구하고 군비지출을 지속하고 있다.

운선, “남북한 군축과 분단구조: 체제내적 저해구조의 고찰,” 함택영 외, 『남북한 군비경쟁과 군축』, pp. 219~236.

50) 『국방백서, 1995~1996』 (서울: 국방부, 1995.10), p. 200.

51) 함택영은 북한군사비지출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종합적으로 비교검토 하였다. 특히 함택영은 1972년 이후 북한군사비지출이 감소한 이유는 군수산업에서 원화구매력의 증가, 중·소의 무상원조 및 유상원조의 불계상, 병력증강에 비례하여 실제로 군사비가 증액되지 않음, 비예산상의 재원으로 군사비의 상당부분 충당 등을 지적하였다. 함택영, “북한경제의 침체와 대외관계,” 황의각 외, 『북한사회주의경제의 침체와 대응』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5), pp. 124~133.

<표 1> 남북한 군비증강 추정: 군비지출
(단위: 경상가격, 억불)

시 기	한 국			북 한 ¹⁾		
	자체군사비	군사원조 ²⁾	총군사비	자체군사비	군사원조	총군사비
1954	1.56 ³⁾	5.0	6.56	1.14	1.0+	2.14+
1960	1.8 ³⁾	2.1	3.9	1.87	자체군사	1.87
1961~64	年평균	年평균	年평균	1961~66 年평균3.2 ⁴⁾	비에 포함	年평균3.1 ⁴⁾
1965	1.34	1.91	3.25			
1967	1.10	1.87	2.97	6.0	"	6.0
1968	1.80	1.53	3.33	7.4	"	7.4
1970	2.30	2.79	5.09	7.5	"	7.5
1971	3.23	3.50	6.73	9.8	"	9.8
1972	3.61	2.78 ⁵⁾	6.39	6.6~9.9	"	8.3~11.6
1975	4.37	3.75 ⁵⁾	8.12	10.4~15.6	"	11.8~17.0
1976	9.33	1.50	10.83	11.4~17.2	"	12.2~18.0
1977	15.92	1.80	17.72	11.6~17.4	1.7	13.0~18.8
1980	20.83	0.23	21.06	16.2~24.3	1.4	17.1~25.2
1981	35.60	1.61 ⁵⁾	37.21	17.7~26.6	0.8	19.7~28.6
1982	40.67	1.08 ⁵⁾	41.75	19.1~28.6	1.4	22.5~32.0
1983	42.47	1.39 ⁵⁾	43.86	20.8~31.4	0.9	22.7~34.1
1984	42.77	~	42.77	22.5~33.7	2.0	24.4~35.6
1985	43.19	~	43.19	23.1~34.7	3.4	26.9~38.5
1986	44.46	~	44.46	23.8~35.7	1.9	28.0~39.9
1987	50.80	~	50.80	24.8~37.2	1.9	29.0~41.4
1988	58.46	~	58.46	24.1~36.2	3.8	34.1~46.2
1989	76.98	~	76.98	25.0~37.6	4.2	30.3~42.9
1990	88.69	~	88.69	26.6~40.0	4.2	26.6~40.0+
1991	92.65	~	92.65	27.9~41.9	10.0	27.9~41.9
1992	103.8	~	103.8	28.0~42.0	5.25	28.0~42.0
1993	113.6 (115.9) ⁶⁾	~	113.6 (115.9)	28.9~43.4	- 별무 별무 별무	28.9~43.4

- 1) 북한의 환율은 구매력평가치(PPP)임.
 - 2) 미국의 무상군원(MAP), 잉여장비 제공 및 무기이양 포함. FMS 차관 및 1966~73의 군사용역 지원자금(MASF)은 월남전 전비로서 불계상, 군사원조는 미국 회계년도 기준이며 실제 집행금액임.
 - 3) 1954, 1960~63년 환율은 특히 한국 원화가 고평가된 시기이므로 3년 이동평균치를 사용함.
 - 4) 1961~69년간 군사비 80億원에서 역산.
 - 5) PL 91~652, Sec.3(1971년), PL 95~384, Sec.23(1978)에 의한 주한미군의 장비이양 포함.
 - 6) 예산안(9조 2,150억원) 기준.
- 출처: 함택영, "북한경제의 침체와 대외관계," 황의각 외, 「북한사회주의경제의 침체와 대응」 p. 127.

또한 남북한의 산업구조는 군수산업 육성 및 군비경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1970년대 중반이후 남한의 중화학공업정책 추진에는 산업화의 심화라는 경제적 목표보다는 1970년대초 미·중화해로 야기된 안보불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방위산업을 육성하려는 군사안보적 목표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⁵²⁾

북한의 산업구조는 남한보다 더 밀접하게 군수산업육성과 관련되어 있다. 북한의 경제구조는 당이 관리하는 부문, 군에서 관리하는 군수산업부문, 정무원에서 관리하는 인민경제부문에 3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군수산업은 정무원에서 관장하는 인민경제부문과 별도로 제2경제위원회에서 관장되며, 제2경제위원회는 정무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국방위원회에 보고한다. 제2경제위원회 산하에는 12개의 총국이 있으며, 경무기분야와 주무기분야, 미사일분야 등의 분야로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대외경제국은 무기 및 군수물자의 수출입을 담당한다. 자원배분과 에너지공급의 최우선권이 군수산업분야에 주어지는 것은 물론이다.⁵³⁾

52) 박종철, 「한국의 중화학공업정책: 추진배경과 투자조정과정」 (성남: 현대사회연구소, 1990), pp. 12~26; Chung-in Moon, "The Political Economy of Defense Industrialization in South Korea: Constraints, Opportunities, and Prospects,"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vol. 2 (Fall, 1991); Chung-in Moon, "Reviving the South Korean Defense Industry: Challenges and Strategie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fty Years of National Independence: Past, Present, and Future of National Security in the Republic of Korea by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June 16~17, 1995).

53) The Economist Intelligence, *Country Report: South Korea and North Korea*, (2nd quarter 1995), p. 43.

북한의 군부는 광산, 농장, 무기공장, 군복공장, 무역회사 등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며, 그 규모는 국민총생산의 20%~4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⁵⁴⁾ 북한에서 무기생산은 국방을 위한 목적 뿐만 아니라 수출을 위한 목적도 지니고 있다. 북한은 이란을 비롯한 중동국가에 무기수출을 통해 부족한 외화를 획득하고 있다.⁵⁵⁾

한편, 남북한의 경제능력과 기술수준의 격차는 남북한 군비통제를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북한은 1975~1976년에 이르기까지 남한에 비해서 2배내지 3배의 국방비를 지출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이후 남북한 국력의 역전으로 말미암아 남한의 총국방비가 북한의 국방비를 상회하기 시작했으며, 1994년 남한의 국방비는 약 120억 달러로서 북한국방비의 2배를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00년에 이르면 남한의 국방비는 북한의 2.4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추세는 북한과 중국 및 소련간 군사협력이 긴밀하지 않으며, 중·소로부터 북한에 대한 무기공급이 저조함에 따라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⁵⁶⁾ 남북한간 국방비규모의 역전은 북한으로 하여금 군사력이 역전되기 전에 전쟁도발을 감행하거나 아니면 군비통제를 통해 군사경쟁을 중지하

54) 「조선일보」, 1995.7.29; Vasily Mikheev, "Reforms of the North Korean Economy,"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5, no. 1 (1993), pp. 84~85, 94; 북한에서 귀순한 강평도는 북한의 군사분야의 경제규모가 70%에 이른다고 주장하였다. 민족통일연구원 초청세미나, 1995.8.1.

55) Peter Hayes, "International Missile Trade and the Two Koreas,"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5, no. 1 (1993), pp. 207~239.

56) Yong-Sup Han, "Breaking off the Cold War Chain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elevance of Arms Control Measures,"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4 (1995), pp. 66~67.

고 정치·경제체제의 전면적 개편을 추진하는 두가지 방안중 한가지를 택하도록 할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구소련은 미국과의 군비경쟁과 경제의 구조적 침체와 체제전반의 경쟁력 상실로 군비통제 및 군축에 합의하고 페레스트로이카정책을 택하였다.

남북한군비통제는 남북한의 정치·경제구조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는 문제다. 남북한간에 군비통제가 본격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남한내에서 국방비감소와 군대규모축소,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투자요구 증가 등의 변화와 함께 북한에서도 대남적화전략포기, 국방비 감소, 군수산업의 민수화 등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남북한간 신뢰구축과 군비통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입장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한다. 남북경협규모의 확대나 대북차관제공, 국제금융시장에서 북한채권의 인수, 북한군수산업의 민수화전환 지원 등과 같은 대북유인정책이 북한의 상응하는 정책변화와 연계하여 검토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남북한군비통제는 사실상 남북경협 및 다른 분야의 포괄적 관계개선과 일괄타결되는 형식을 띠게 될 것이다.

제 V 장 미·북관계 및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남북한군비통제 추진방안

앞으로 남북한군비통제는 한편으로는 미·북관계 진전과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관계의 전반적 틀과 관련을 맺으면서 전개될 것이다. 미·북관계 및 남북관계를 고려한 남북한군비통제방안은 일종의 이행계획표와 같은 성격을 지닌 것으로 대북협상 및 한·미정 책협조를 위한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남북한군비통제는 미·북관계 진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북한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북한핵 문제가 북한의 체제인정 및 안보에 대한 보장¹⁾과 미·북관계 개선, 경제적 대가제공 등 포괄적인 일괄타결방안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점이다. 이렇게 볼 때 남북한군비통제도 미·북관계 개선의 포괄적 이행구도속에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은 대미관계 개선을 통해서 경제적 지원과 국제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보장을 받아내려고 하고 있으며, 미국과 상설적 대화통로를 마련함으로써 주한미군문제와 평화체제전환문제가 지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이처럼 미·북관계개선에 의해서 북한의 체제생존과 제한적 개방전략이 성공하게 되면, 북한은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군비통제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

1) 북한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미군의 전술적 핵무기의 철수, 북한에 대한 핵선제불공격보장(negative security assurance), 팀스피리트훈련 중단 등 북한안보에 대한 일차적 우려요인이 해소되었다.

러나 미국과 북한간 군비통제 협상이 진행될 경우 남한이 배제되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미·북관계 진전을 고려하되 남북한의 주도에 의해 군비통제협상을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남북한군비통제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 걸친 남북관계 전반의 개선구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남북한간 정치적 신뢰구축이나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이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체제안보와 관련된 군비통제분야에서 먼저 진전이 있기는 힘들다. 따라서 남북한군비통제는 남북관계의 포괄적 진전구도와 병행하여 추진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남북한군비통제를 제약하는 남북한 체제내부의 내적 요인들도 존재하고 있다. 군비통제에 부정적인 남북한의 군부, 분산적인 남한의 정책결정구조와 중앙집중적인 북한의 정책결정구조간의 차이, 탄력적이고 공개적·공식적인 협상통로를 선호하는 남한의 협상유형과 경직되고 공식·비공식 대화통로를 선호하는 북한의 협상유형, 상대방의 공격에 대한 위협의식의 공유, 상대방군사력에 대한 위협의식, 군비통제의 패러다임의 차이 등은 남북한군비통제를 어렵게 하는 남북한의 체제 내적 요인들이다.²⁾ 따라서 남북한군비통제는 군사분야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남북한의 상호인식의 변화와 전반적인 남북관계에 대한 포괄적 합의의 토대위에서 진행될 수 있다.

2) Cunnng-in Moon, *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Domestic Perceptions, Regional Dynamics, International Penetrations* (Washington D. C.: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1995), pp. 110~148.

다음에서 미·북관계를 미·북연락사무소 설치, 미·북관계 진전, 미·북국교정상화 등으로 구분하여 전망하고자 한다. 그리고 남북관계의 진전과정을 남북대화 재개, 남북화해·협력 단계, 남북연합 단계 등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이와같이 남북관계 및 미·북관계를 3단계로 전망하고 이러한 구도속에서 각 단계에 상응하는 남북한군비통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1단계, 미·북연락사무소 개설 및 남북대화 재개: 군사적 신뢰구축

1단계는 미·북연락사무소가 설치되고 부분적으로 남북대화가 재개되는 기간이다. 이 기간동안 북한핵동결이 유지되는 가운데 KEDO-북한간 경수로공급협정이 체결되고 KEDO와 주계약자간 상업계약이 체결될 것이다.

미·북기본합의문의 여러가지 문제점과 모호성에도 불구하고³⁾ 미국과 북한은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 왔다. 북한은 기본합의문 및 비밀각서(confidential minute)⁴⁾의 내용에 따

3) 미·북기본합의문의 문제점으로 과거핵규정의 유보, 북한핵카드의 유효기간 지속, 경수로건설과 합의이행의 연계화, 합의이행 보장수단 결여, 한국측의 역할 모호 및 과도한 비용부담 등이 지적된다. 윤덕민, “북한 핵개발과 대북협상,” 「전략연구」, 제3권 (1994), pp. 47~51.

4) 미국과 북한이 1994년 10월 21일 기본합의문 체결시 교환한 비밀각서에는 경수로의 종류, 미·북원자력협정 체결, 핵동결의 구체적 대상, 대체에너지의 규모, 경수로건설의 상당부문완료(completion of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LWR project)의 의미, 특별사찰의 시기, 흑연감속로 및 관련시설의 해체 시기, 핵심원자력부품(key nuclear component)의 내용,

라 5MWe원자로 봉인, 50MWe 및 200MWe원자로의 건설중단, 방사화학실험실 폐쇄 등 핵동결조치를 실시하고 이 시설들에 대한 IAEA의 연속성보장사찰을 수용하여 왔다. 또한 북한은 사용후핵연료의 건식보관에도 합의(1995.1.23)하였다.

미국무부는 대북제재 완화의 일환으로 1995년 1월 20일 통신 및 정보, 금융거래, 기타 무역, 기본합의문 이행을 위한 기타 단계적 조치 등 4개항의 대북제재완화조치를 발표했다.⁵⁾ 그리고 미 재무부는 그 후속조치로 1995년 2월 14일 해외자산규제령(Foreign Assets Control Regulation)을 개정하여 금융거래, 인적 교류, 북한 상품 반입, 북한언론기관의 활동 허용, 미기업의 경수로 및 에너지분야 참여 허용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⁶⁾ 또한 미연방통신위원회(FCC)는 1995년 4월 10일자로 AT&T사와 일본의 국제전신-전화회사(KDD)를 통한 북한과의 전화개통을 허용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5MWe원자로동결에 대한 대체에너지로 1995년 1월중 5만톤의 증유와 1995년 10월말까지 추가로 10만톤의 증유를 제공하였다.

미국과 북한은 경수로공급협정에 관해 협의하기 위해 미-북경수로전문가회담(1차 북경, 1994.11; 2차 베를린, 1995.1; 3차 베를린,

사용후핵연료의 최종처리시기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1994.10.22.

5) U.S. Department of State, "Easing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January 20, 1995).

6) 이러한 대북완화조치가 초보적 수준에 그친 것이며, 보다 포괄적인 형태의 대북제재완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Selig Harrison, "Concessions on All Sides Can Save the North Korea Accord,"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April 11, 1995.

1995.3; 4차 베를린, 1995.4)과 준고위급회담(쿠알라룸푸르, 1995.5~6)을 개최하여 6월 13일 공동언론발표문을 공표하였다. 미·북간 경수로협상의 타결에 의해 경수로사업의 추진, KEDO의 역할 규정, 대북중유제공, 사용후핵연료봉의 처리 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KEDO와 북한간 1차회담(95.9.11~15, 쿠알라룸푸르) 및 2차회담(95.10, 뉴욕)에서 경수로공급범위, 비용상환방법, 프로그램코디네이터의 역할 등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미·북경수로협상이 타결되었으며, 이미 미·북연락사무소설치문제에 대해 미·북전문가회담(워싱턴 94.12; 평양 95.1; 평양 95.9; 평양 95.9)에서 연락사무소의 위치선정, 외교행랑의 판문점 통과여부, 외교관의 활동범위 등을 제외하고 기술적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1996년 상반기중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가 설치될 것으로 전망된다.⁷⁾

연락사무소개설후 북한과 미국은 양국간 경제관계 확대와 기타 정치·군사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앞으로 북한외교관의 미국내 활동범위 확대, 금융거래, 무역확대, 미기업의 평양사무소 설치, 미기업의 직접투자 등을 점차 허용할 것이다. 아울러 미국은 수출통제법(Export Control Act), 적성국교역법(Trading With the Enemy Act), 해외자산통제령(Foreign Assets Control Regulations), 무역협정연장법(Trade Agreements Extension

7) 미무부는 1995년 9월 25일부터 평양주재 스웨덴 대사관이 북한을 여행 중인 미국시민에 대해 임시 영사보호권을 행사한다고 발표했다. 「중앙일보」, 1995.9.28.

Act), 수출관리법(Export Administration Act), 해외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 등에 근거한 다양한 대북제재조치를 단계적으로 해제할 것이다. 또한 미국과 북한간에는 사회, 문화, 학술 분야, 종교분야의 각종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미기업의 대북투자⁸⁾도 활성화될 것이다.

이처럼 미·북관계가 진전되는 상황에서 남북대화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미·북연락사무소 개설과 남북대화가 기계적으로 연계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북한은 미·북관계 개선과 일·북수교교섭을 진행하면서 제한적인 수준에서나마 남북대화 재개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북한이 1996년중 김정일승계체제에 따른 권력구조 개편 및 대내외정책의 기본방향을 조정하고 대미·일관계 개선의 기본구도를 마련함으로써 남북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여유와 필요성을 인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남북대화가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남북기본합의서」의 모든 분야가 전면적으로 이행되거나 모든 분야의 분과위원회 및 공동위원회가 동시에 가동되기는 힘들 것이다. 남북경제협력과 종교·문화분야의 인적 교류 등 비정치적이고 기능적이며 북한체제에 대한 개방효과가 적은 분야에서부터 선별적이고 점진적으로 남북대화가 재개될 것이다.

8) 미·북경제협력가운데 북한광물의 대미수출과 북한의 에너지산업에 대한 미기업의 투자가 특히 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에 본사를 둔 미광물회사인 미네럴 테크놀로지사는 1995년 6월 10일 북한의 마그네사이트 클린카 수출입회사와 북한산 마그네사이트 수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일보」, 1995.6.12; 미국의 스탠튼그룹은 북한의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미·북합작으로 발전소건설에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1995.11.6.

가. 군사적 신뢰구축

남북대화가 재개되는 상황에서 남북한간 우선적으로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들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군사적 신뢰조치만으로는 북한의 대남 군사력우위를 시정하거나 북한의 기습공격능력을 약화시키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신뢰구축조치는 이를 검증하는데 수반되는 어려움 및 비용에 비해 이를 위반하기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문제점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신뢰구축조치들을 실행에 옮긴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전쟁 가능성이 감소하거나 적대세력간의 불신과 상호위협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구축조치들은 남북 상호간의 군사력상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게 함으로써 군사적 공격가능성을 제한하고, 상대방의 군사적 공격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전에 탐지할 수 있으며, 향후 군비통제를 위한 협상창구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더욱이 남북한과 같이 군사적 대립과 상호불신이 뿌리깊은 경우, 시범적 신뢰구축조치만이라도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신뢰구축조치의 목록이나 구체적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구축조치를 탐색하고 협상하고 주도하며, 이해하는 과정에서 정책결정자와 전문가, 일반인들 사이에 신뢰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안보문제에 대한 개념과 접근방식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한, 단순히 신뢰구축조치를 적용해서 정보교환과 군사활동에 대한 투명성이 증대된다고

하더라도 군사적 긴장이 자동적으로 감소되지는 않는다.⁹⁾

유럽에서 실시된 신뢰구축조치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100여가지 이상의 신뢰구축조치는 대체로 정보 및 통신에 관한 신뢰구축조치(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BMs)와 제한적 신뢰구축(constraint CBMs)조치로 구분된다. 정보 및 통신에 관한 신뢰구축조치에는 정보조치(information measures, 군병력, 시설, 구조, 활동 등에 대한 정보)와 경험조치(experience measures, 군인사의 교류), 통신조치(communication measures, 핫라인 등 통신수단 확보), 통보조치(notification measures, 특정 군사활동의 사전 통보), 참관조치(observation-of-movement conduct measures, 특정 군사행동의 참관)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제한적 신뢰구축에는 사찰(inspection measures, 군사력, 시설, 구조, 활동 등에 대한 사찰), 검증조치 촉진(facilitation of verification measures, 효과적인 검증조치), 행동제한조치(activity constraint measures, 도발적 군사행동의 규제조치), 배치제한조치(deployment constraint measures, 도발적인 군사력 배치 금지), 기술제한조치(technology constraint measures, 특정 군사기술과 군사체계의 금지) 등이 해당된다.¹⁰⁾

9) James Macintosh, "Inter-Korean CBMs and Arms Reduction: The Conventional Forces Dimensio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fty Years of National Independence: Past, Present, and Future of National Security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June 16~17, 1995), pp. 15~21.

10) James Macintosh, "The Role of Confidence Building in Inter~Korean Security Relations," 1995 ROK-Canadian Arms Control Workshop, *North-Pacific Arms Control: Confidence-Building at a Regional Level*, (Hosted by Arms Control Research Center,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Korea and The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

남북대화재개 단계에서는 우선적으로 정보 및 통신에 관한 신뢰 구축조치가 이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한적 신뢰구축조치 가운데 초보적 수준의 사찰이나 검증이 실시될 수 있으며, 배치제한조치나 기술제한조치 등은 그 다음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다.

남북한간 우선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에는 「남북기본합의서」 가운데,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13조)와 불가침이행 및 보장장치와 관련(12조)하여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 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문제들이 포함될 수 있다. 아울러 「불가침분야 부속합의서」 2장중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우발적 무력충돌방지에 관한 후속대책이 필요한 데, 이상과 같은 신뢰구축조치들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우발적 무력충돌방지에 기여할 것이다.

군사적 신뢰구축조치가운데 통신부문과 상호통보부문에 대해서는 비교적 남북한간 합의가 용이하다. 그러나 군인사의 교환이나 정보교환 등은 합의가 이루어지기 힘든 부문이다. 군사적 신뢰구축에 관한 다음 사항들이 단기간에 전부 실행에 옮겨지기 힘들 수도 있다. 남북한간에는 다음의 군사적 신뢰구축조치가운데 통신부문과 통보부문 등 몇 가지 선별적 사항이 이행된 뒤 운용적 군비통제에 관한 사항들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1) 통신조치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설치문제는 이미 남북간 기술적 문제에 대해서까지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남북한의 실천의지만 있으면, 즉시 이행될 수 있다.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되면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우발적 충돌이나 돌발사태의 확대를 방지하고 그 수습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 직통전화는 남한의 국방부장관과 북한의 인민무력부장간 뿐만 아니라 전방지휘소 및 위기관리반간에 설치될수도 있다. 또한 비정기적인 핫라인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의사소통과 정보교환을 위해서 쿨라인(cool line)을 설치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동위기통제소(joint crisis control center)의 설치나 조기경보감지센터(early warning sensor center)의 운영 등 위기발생방지를 위해 사전에 합의할 수 있는 기타 통신부문의 신뢰구축에 대해서 남북한간에 단시일내에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이다.¹¹⁾

(2) 통 보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을 사전에 통보하는 것은 군사활동의 투명성을 증대함으로써 기습공격의 가능성을 방지하고 상호 군사활동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11) 문정인, “남북한 신뢰구축: 그 가능성과 한계,” 함택영, 「남북한군비경쟁과 군축」, p. 203.

헬싱키최종의정서에서는 25,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규모 기동 훈련에 대해서 모든 회원국에게 훈련의 명칭, 목적, 참가국가, 참가군대의 종류 및 병력, 훈련실시지역과 소요기간 등을 21일 전에 통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25,000명 이하가 참여하는 소규모 군사기동훈련에 대해서도 훈련지역 인근의 회원국에게 사전통보하도록 하였다. 헬싱키최종의정서에 따라 1975년부터 1986년까지 25,000명 이상 군사기동훈련이 총 130회 통보(NATO 70회, WTO 32회, 중립·비동맹 21회)되었다. 그리고 스톡홀름협약에서는 사전통보기준이 보다 강화되어 13,000명 이상의 병력과 300대 이상의 탱크가 참여하는 지상훈련의 42일 이전 통보, 매년 11월 15일 이전 차기년도 유럽내 군사훈련 실시계획의 상호교환, 7,500명 이상(2년전) 및 40,000명 이상(1년전) 군사훈련의 사전통보 등이 규정되었다. 스톡홀름협약에 의해 1988~1989년까지 74회의 군사훈련 사전통보(NATO 30회, WTO 37회, 중립·비동맹 7회)가 있었다.¹²⁾

한편, 군사활동의 사전통보는 계획된 군사활동의 사전통보와 비계획된 군사활동의 사전통보로 구분될 수 있다. 계획된 군사활동의 사전통보는 다음해의 군사활동을 일정시점(예를 들면 11월 말)까지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단일작전지휘체제하의 지상군, 해군, 공군의 단독훈련이나 합동군사훈련의 경우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는 통보대상이 된다. 통보내용에는 군사활동의 명칭, 형태별 부대수, 부대별 병력·전차·야포의 수, 군사활동 일정표, 군사

12) 이서항, “군축협상의 사례분석과 남북한 군축전망,” 함택영 외, 「남북한 군비경쟁과 군축」, pp. 244~250.

활동 지역, 훈련지휘체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계획되지 않은 비상군사활동의 경우 최소한 일정기간(예를 들면 45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군사활동의 통보에 대한 신뢰구축이 형성될 경우 훈련 회수, 훈련 시기, 장소, 기간, 이동방향, 이동속도 등 세부사항에 대한 상한선을 합의할 수 있다.¹³⁾

남북한의 경우, 신뢰구축의 초기단계에서는 독립된 해군과 공군의 활동을 통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것은 중요한 공격수단이 주로 지상군이며, 해군과 공군은 기동력이 뛰어나 조기경보가 힘들며, 참관이나 검증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습공격의 목적을 띠고 있는 상륙부대나 공수부대의 활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엄격한 통보기준을 정해야 할 것이다.

군사활동의 통보기준(통보임계점)은 군비통제협상에서 합의하기 힘든 분야의 하나이다. 군사활동의 통보기준으로는 병력과 장비, 군편제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군사활동의 통보기준으로 가변적인 병력이나 장비보다 군편제를 기준으로 하여 사단을 군편제임계점으로 설정해야 한다. 사단병력수의 차이로 인한 문제점은 병력수 및 장비의 임계점을 고려하여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¹⁴⁾

남북한의 경우 군사력 집중에 의한 우발적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헬싱키최종의정서보다 병력 및 장비의 통보기준을 높

13) 박영호, “남북한간의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 통일원,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서울: 통일원, 1990), pp. 127~128.

14) 전성훈, 「한반도 군비통제방안 연구: 유럽 군비통제조약의 시사점과 관련하여」, pp. 169~176.

계 설정하고 합의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26,000명 이상 또는 탱크 600대 이상의 규모가 참가하는 기동훈련 및 군사훈련의 경우 45일전에 상호 의무적으로 통고하고, 상기 통고된 군사훈련의 경우 공중 또는 육상 현장검증단의 방문을 허용하며, 이들의 이동 자유 및 자기측 장비 사용 권한을 허용해야 한다. 그리고 상호 2년전에 통고하지 않으면 50,000이상의 군사훈련을 금지해야 한다.¹⁵⁾

한편, 미군을 포함하여 남북한 영토내에 입국하거나 경유하는 제3국의 모든 군사력(해군과 공군 포함)도 사전통보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은 특히 한-미합동군사훈련이나 위기발생시 미군의 한반도 추가배치에 대한 사전통보를 강력히 요청할 것이다. 이 경우 외국 군사력의 부대이동 통보임계시점은 한반도 도착시점으로 해야 할 것이다.¹⁶⁾

(3) 군인사교류

군인사간 교류는 단기시찰 및 연수와 학술적 교류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상호 군사활동 및 군사전략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데 기여한다. 남북한의 군인사교류는 우선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대표 및 실무위원들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그리고 군인사교류에는 각

15) 한용섭, “한반도군비통제 협상대안과 평가,” 『국방학술논총』, 제6집(1992), p. 370.

16) 전성훈, 「한반도 군비통제방안 연구: 유럽 군비통제조약의 시사점과 관련하여」, pp. 177~178.

군의 각급 장교, 군사학교의 교육생, 군사전문요원이 해당될 수 있다. 방문기관에는 군부대, 군사연구기관, 군교육기관, 군사박물관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학술연구나 학술회의 참관을 통해 군인사의 교류가 추진될 수 있으며, 군사훈련참관과 관련하여 군인사교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또한 양측의 군창건일에 초청방문하는 것과 해군함정의 상호방문도 군인사교류의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4) 참 관

군사훈련 참관은 군사활동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한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의 하나이다. 헬싱키최종의정서에서 사전통보대상에 해당하는 군사기동훈련의 경우 옵서버를 초청하도록 규정되었다. 이에 따라 1975~1986년 동안 총 72회의 훈련참관 초청(NATO 50회, WTO 10회, 중립·비동맹 12회)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스톡홀름협약에서는 17,000명 이상 규모의 지상훈련(상륙작전 및 공수부대의 경우에는 5,000명 이상)에 대해 훈련참관을 하도록 규정되었다. 1988~1989년 동안 33회(NATO 19회, WTO 12회, 중립·비동맹 2회)의 참관초청이 이루어졌다.¹⁷⁾

계획된 군사훈련에 대한 참관의 경우, 군사활동 개시 45일전에 초청장을 발송하도록 하며, 긴급 군사훈련에 대한 참관초청의 경

17) 이서항, “군축협상 사례분석과 남북한 군축전망,” 함택영, 「남북한 군비 경쟁과 군축」, pp. 246~249.

우, 통보와 동시에 초청장을 발송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관자의 수는 10인 내외로 하며, 참석 여부는 초청장을 받은 후 21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한다. 그리고 군사훈련 참관단에는 남북한의 군인사 뿐만 아니라 주변 4국과 유엔사령부대표등이 포함될 수도 있다. 참관초청국은 참관단을 위해 브리핑계획, 상황판 준비, 관측장비 제공 등의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¹⁸⁾

팀스피리트훈련과 을지포커스렌즈훈련 등 한·미합동군사훈련도 참관초청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은 1981년 12월 28일과 1982년 1월 23일 북한과 중국에게 1982년 팀스피리트훈련에 군사참관인을 파견할 것을 제안했다. 1981년 북한을 방문한 미국의 솔라즈(Stephen Solarz)의원이 김일성에게 동 훈련의 참관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자, 김일성은 흥미있는 제안이지만 미국이 북한에 대해 대립적 정책을 계속하고 남한에 대해 군사원조를 제공하는 한 어떠한 합의도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¹⁹⁾ 이후에도 미국과 남한은 북한에게 팀스피리트훈련의 수준과, 규모, 시기를 북한측에 통보하고 동 훈련에 참관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팀스피리트훈련을 참관하는 것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의미와 주한미군의 존재를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에서 군사훈련참관을 거부해 왔다.

18) 남만권, “군비통제 감시 및 검증에 대한 소고,” 『국방강론』, 3집 6권 (1994), p. 10.

19) 강성학, “한반도 군축을 위한 신뢰구축 방안,” 이호재 편, 『한반도군축론』 (서울: 법문사, 1989), pp. 232~233.

(5) 정보교환

유럽의 상호균형감축협상(MBFR)이 1973년부터 15년동안 400여 회에 걸친 회의에도 불구하고 실패로 끝난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는 NATO와 WTO간에 제시된 자료에 대한 불신때문이었다. 따라서 신빙성있는 자료의 교환이 신뢰구축과 효과적인 군비통제의 중요한 요인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정보교환은 군사력보유 현황, 군사력배치 및 운용현황, 군사비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교환함으로써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군비 통제와 검증을 용이하게 하는 조치이다. 정보교환의 대상자료가운데 군사력보유현황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주요 지상군부대의 지휘조직·병력·무기체계, 전단·전대급 이상의 해군부대 정보, 비행단·항공단급 이상의 공·육·해군 항공부대 정보, 동원예비군 정보, 유도무기 정보, 군수지원시설 정보, 군수 산업 정보 등이 포함된다. 군사력운용현황에는 다음해에 계획된 여단급 이상 부대의 병력·무기체계 배치계획에 관한 정보와 특정 주요지역(전방지역, DMZ)의 군사력현황이 해당된다. 그리고 군사비에는 다음해의 군사비총액과 군별 예산 및 항목별 예산내역이 포함된다.

북한은 군사정보교환이 북한의 군사시설 및 군사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더 나아가 북한사회의 개방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정보교환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정보교환문제는 북한사회의 전반적인 개혁정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

기 때문에 초보적인 신뢰구축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다. 또한 남한의 군사상황에 대한 정보는 북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정보교환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다. 북한이 정보교환방안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제한된 군사자료만 제공하거나 형식적이고 부정확한 자료만을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남북한간 정보교환은 신뢰구축단계와 운용적 군비통제 단계, 군비축소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군사공동위원회산하에 「정보교환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한다. 신뢰구축단계에서는 「국방백서」를 교환하고 여기에 제시된 개괄적인 자료를 교환하도록 한다. 운용적 군비통제 단계에서는 군사력 운용상황 및 부대이동, 군사훈련 등에 대한 자료를 교환하되, 특히 비무장지대의 무장화실태, 배치제한지역 설정에 따른 부대재배치상황 등에 관한 자료의 교환이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군비축소단계에서는 무기 및 병력의 현황과 배치, 감축대상 군사력에 관한 정보가 교환되어야 한다. 아울러 각 단계에서 현장검증과 상주감시활동, 항공정찰 등에 필요한 정보가 교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보교환은 년 1회 실시하되 쌍방향의 된 서식에 따른 문서나 영상정보방식을 택하도록 한다.

한편, 북한은 주한미군의 군사력현황에 대한 자료를 정보교환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할 것이다. 주한미군의 자료를 정보교환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주한미군전력에 관한 정보를 한국 군사력에 포함시켜 교환하는 방안과 주한미군 관련 정보를 단순히 남북

한간 신뢰조성차원에서 교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²⁰⁾ 주한미군에 관한 정보교환은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국군사력에 포함시키기 보다는 별도의 자료목록으로 제공하는 바람직할 것이다.

나. 신뢰구축과 대북경협 및 차관제공

북한은 실질적 군축이 병행되지 않는 한, 군인사교류나 정보교환, 군사훈련 통보와 같은 조치들이 북한의 대남군사력우세를 약화시키고 북한의 군사적 투명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이를 반대해왔다. 따라서 북한을 군사적 신뢰구축에 대한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서독은 이산가족 상봉, 정치범석방, 통행자유 확대, 국경통제절차의 완화, 국경지대의 무장해제 등의 분야에서 동독으로부터 구체적인 양보를 얻어내는 대가로 대동독지불금 일괄지급 및 차관보증을 제공하였다. 서독연방정부는 1963년 이후 총 33,755명의 정치범의 서독인도와 215,019명의 이산가족의 서독이주, 40만명의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총 약 35억 DM의 대가를 지불하였다.²¹⁾ 그리고 1983년 서독연방정부는 10억 DM의 상업차관을 동독에 제공하였으며, 1984년에는 9억 5천만 DM의 상업차관을 제공하였다.

20) 남만권, 김명진, “남북한 정보교환조치의 협의·실천방향,” 『국방강론』, 3집 6권(1994), pp. 127~138.

21) 독일내무성차관 Walter Priesnitz의 민족통일연구원 방문 간담회 발표내용, 1995.9.6.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동독은 동독국경선 통제관행과 통행절차를 개선하였다. 그리고 1983년 9월 동독은 경제선지역의 4군데에 배치되어있던 SM-70자동발사장치를 철거하였다. 아울러 동독국경 수비대는 54,000개의 SM-70자동발사장치를 모두 철거하고 지뢰를 제거하였으며, 그대신 전기안전장치를 후방에 설치하였다.²²⁾

남북한 신뢰구축의 경우에도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및 경제협력사업, 대북차관제공과 연계하여 초보적 신뢰구축조치를 실시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남북경제협력기금」의 일부분이나 별도의 「대북차관기금」을 조성하여 북한에 차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제금융기관의 대북차관을 보증하거나 「국제금융채권단」에 한국의 해외법인 금융기관이 참여하여 대북차관을 제공할 수도 있다.²³⁾ 그리고 북한이 외채부담능력을 없는 점을 감안하여 국제금융시장에서 북한의 외채에 대한 채권을 확보함으로써 북한의 대외지불능력을 향상시키고 장기적으로 북한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또한 북한이 IBRD, IMF, ADB 등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차관도입과 UNDP를 통한 다자간 경제협력에 관심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의 곤잘레스수정안(Gonzalez Amendment)

22) 독일경제사회통합 연구를 위한 단기조사단, 「독일경제사회통합에 관한 연구」(1990), pp. 122~123.

23) 이주열, “남북경제교류 지원과 통화통합구상,” 한국개발연구원, 「남북한 경제관계 발전을 위한 부문별 과제연구」(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1), pp. 629~630.

에 의하면 미재무성장관은 IBRD 및 ADB의 미국측 집행이사진에게 미국민의 재산을 몰수한 국가에 대한 지원을 반대투표할 것을 지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이 규정과 관련한 미국의 대북제재조치가 해제되어야 한다.²⁴⁾ 한-미간 협의를 통해 북한의 신뢰구축조치와 연계한 일괄타결구도 하에서 미국의 대북제재조치 해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남북한의 독자적 검증 실시

군비통제 및 군비축소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효과적 인 검증체제에 대한 합의가 필수적이다. 유럽의 군비통제협상에서 검증문제가 협상의 최대 현안이 되었던 점은 검증의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검증방법에는 재래식 정보수집, 국가기술수단(national technical means, 정찰항공기, 인공위성, 각종 리모트 센서 등에 의한 정보수집)²⁵⁾, 현장검사(on-site inspection, 지진탐사기, 고정배치 카메라 등에 의한 원격현장검사, 지정 시간 및 지정 지역에 대한 제한된 현장검사, 주기적 현장검사, 상주현장검사, 무제한 지역사찰 등), 영공개방 등이 있다.

남북한과 같이 상호대립과 불신이 첨예화된 경우, 상호신뢰를

24) An Asia Society Research Project for the Rockefeller Foundation, *Possible Areas of Cooperation with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ppendix D, Restrictions on U.S.~DPRK Economic Interaction 참조.

25) 국가기술수단에 대한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기 바람. 김명진, “남북한 군비통제검증 및 정보수집 기술,” 「국방강론」, 3집 6권 (1994), pp. 330~343.

구축하고 군비통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상호합의할 수 있는 검증체제를 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신뢰구축의 초기 단계에서는 남북한이 상호검증체제에 대해서 합의하기 힘들 것이기 때문에 남북한이 독자적으로 검증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이 독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검증방법에는 군사용 및 상업용 인공위성, 감시 및 조기경보용 통신정보(communication intelligence: COMINT), 전자정보(electronics intelligence: ELINT), 영상정보(image intelligence: IMINT)의 수집 등의 방법이 있다.

2. 2단계, 미·북관계 진전 및 남북화해·협력: 운용적 군비통제와 선별적 군축

2단계는 미·북연락사무소개설이후 미·북관계가 진전되고 경수로 건설을 위한 세부계획이 진행되는 기간이다. 그리고 남북간에는 화해·협력을 위한 구체적 협력방안들이 이행될 것이다.

경수로건설의 상당부분(significant portion)이 완료되고, 경수로핵심부품(key nuclear components)이 북한에 인도될 시점(경수로공급협정 체결후 4~5년, 2000~2001년경)을 전후해서 미국은 원자력에너지법(Atomic Energy Act)과 핵비확산법(Nuclear Nonproliferation Act) 중 대북관련 규제사항을 해제함으로써 대북경수로건설을 위한 법적·제도적 절차를 마련할 것이다.²⁶⁾

26) Zachary S. Davis, Larry A. Niksch, Larry Q. Nowels, et al., *Korea: Procedural and Jurisdictional Questions Regarding Possible Normalization*

아울러 이 기간동안 미·북간에는 미군유해송환문제, 북한의 미사일개발 및 수출문제, 북한의 생화학무기 개발, 북한의 인권문제 등이 현안으로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평화체제전환과 한반도군비통제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북한에 경수로핵심부품이 인도될 시점을 전후하여 이상과 같은 문제들을 둘러싸고 미·북간에 포괄적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북한은 미·북연락사무소를 통한 미·북간 대화통로를 유지하는 한편, 미·북간 장성급접촉을 통해서 정전기구의 틀밖에서 미·북간 군사협상을 추진하고자 할 것이다. 특히 미·북대화과정에서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전진배치병력의 후방 배치문제 등이 협의될 것이다.

한편, 남북한간에는 경제분야에서 임가공교역의 확대와 함께 나진, 선봉지구 및 남포지역에 대한 남한기업의 직접투자가 추진될 것이다. 이에 따라 남북한 당국간 이중과세방지, 투자보장, 청산제정 설치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남한기업의 사무소가 평양이나 나진·선봉지역에 설치되고 무역진흥공사의 평양사무소설치가 추진될 수도 있다. 그리고 에너지개발, 광물자원개발, 사회간접자본투자 등의 분야에서 남북한과 국제금융 및 국제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남북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경수로사업과 관련하여 남한의 기술자가 북한을 방

문하고 장비와 원자재가 북한에 제공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한간 인적 왕래와 통신, 통상 등에 대한 협의가 진행될 것이며, 통신·통상·통행에 대한 합의서가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이에 따라 군비통제분야에서도 보다 실질적인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미·북대화와 남북대화가 진전되는 상황에서 남북한 군비통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군비통제와 관련된 구체적 사안들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다른 분야의 조치들을 종합적으로 연계추진하는 포괄적 청사진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경협확대와 인적 교류 확대, 북한에 대한 대외차관지원 등의 조치들을 종적·횡적으로 군비통제조치와 연계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고위급회담에서는 경제공동위원회와 군사공동위원회의 각 사업들의 연계추진일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각 공동위원회에서 해당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추진방식이 바람직하다.

가. 운용적 군비통제 및 선별적 군축

군비통제와 관련하여 이 단계에서는 불가침분야 부속합의서 가운데 미합의사항으로 남겨졌던 사항들인 군사분계선 일대의 무력증강금지, 상대방에 대한 정찰활동 금지, 상대방에 대한 영해·영공 봉쇄금지, 서울지역과 평양지역의 안전보장문제 등에 대한 협의가 있게 될 것이다. 이 가운데 북한이 제안했던 군사분계선 일

대의 무력증강금지와 남한이 제안한 수도권지역 안전보장문제는 배치제한지역 설정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북한이 제안한 상대방에 대한 정찰활동금지문제는 검증을 위한 국가감시능력(national technical measures)을 제한하려는 조치로 북한군사력의 투명성 제고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영공·영해봉쇄금지는 북한에 대해 있을 수 있는 제재 및 봉쇄조치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북한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중지,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및 평화적 이용, 한반도비핵지대화, 주한미군의 한강 이남 배치 및 궁극적 철수 등 군사력의 배치제한과 관련된 운용적 군비통제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남한은 북한의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와 주한미군철수 주장을 대남전력우위 확보를 위한 전술적 차원의 제안으로 인식하여 왔다. 그러나 한국도 전진배치된 병력의 후방배치와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및 평화적 이용에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미국도 전진배치병력의 후방이동을 통해 군사분계선 지역의 군사적 밀집도를 완화시키려는 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운용적 군비통제와 관련하여 비무장지대 비무장화, 배치제한지역 설정, 남북한 군사력의 후방배치문제가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한·미합동군사훈련 및 주한미군의 후방배치 및 단계적 철수문제를 집요하게 주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전력배치제한지역에 대한 문제 논의시 동 문제가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1)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및 평화적 이용

비무장지대에 설치된 군사시설과 무기, 병력을 철수하고 방송시설 및 선전물을 제거함으로써 비무장지대를 비무장화하고 나아가서 이 지역에 산업시설과 문화·체육시설을 건설함으로써 평화지대화하는 것은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한 남북한 군사력의 밀집현상을 완화시키고 긴장완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휴전협정 제2조 13항(A)에는 비무장지대의 군비통제방안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남북한은 휴전협정을 위반하고 비무장지대 내에 GP와 OP, 방송시설, 철책선, 막사, 기타 시설 등은 설치해 놓고 있다. 특히 북한은 현재 각종 진지 66개소(28개 박격포 진지, 25개 대공포 진지, 4개 야포진지, 9개 대전차포진지), 3개 갭도, 29.4Km의 지뢰지대, 283개소의 감시소(GP) 및 관측소(OP), 100개소의 방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남한은 96개소의 GP 및 OP와 10개의 방송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적으로 북한측의 약 3분의 1수준이다.

비무장지대에 관한 문제는 휴전협정에만 규정되어 있으며, 남북 기본합의서에는 불가침경계선과 구역(기본합의서 11조)에 관해서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휴전체제의 평화체제전환과정에서 비무장지대의 관리 및 비무장화에 관한 문제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를 위해서는 우선 비무장지대내의 병력 배치, 군사시설, 지형조건, 순찰활동 등에 대한 현황자료를 교환하

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남북한은 공동조사반을 구성하여 관련 자료를 토대로 모든 군사시설과 기타 시설물들을 대조하고 이것들의 철수방안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산하에 「비무장지대 공동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비무장지대 공동조사위원회」는 ①비무장지대내 군사시설에 대한 공동 조사, ②비무장지대내의 정전협정 위반사항(요새, 거점, 진지, 무장인원 등)에 대한 협의·시정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③군사분계선 표지물에 대한 공동작업, ④군사분계선 및 출입문의 공동관리, ⑤군사분계선 통과인원에 대한 상호 보호 및 통제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는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전진배치된 시설, 장비, 병력을 시범적으로 철거하고 이를 점차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다. 시범적 비무장화지역으로는 ①개성-문산 축선 사이지역, ②의정부-철원 축선 사이지역, ③강원도지역 또는 동해안지역 등을 선정할 수 있다.

비무장지대를 비무장화한 후 이 지역에 대한 평화적 이용방안은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기반조성단계에서는 접경지역에 대한 남한의 개발, 국제기구를 통한 생태계 조사, 종합관광 상품 개발 등이 실시될 수 있다. 초보단계에서는 종합적 공동학술조사, 비무장지대내 이벤트 행사 유치, 비무장지대내 공동 농업경영 등을 실시한다. 활성화단계에서는 관광특구개발, 국제적 이벤트 개최, 도로·철도 연결 및 비무장지대의 공동개발 확대, 시범적 합작

공단 건설 등이 추진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무장지대의 평화 지대화와 평화시건설을 추진한다.²⁷⁾

이상과 같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방안가운데 특히 이 지역에 공장을 건설하거나 발전소건설 등을 통해 북한의 노동력을 이용하고 북한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되도록 하는 방안은 북한으로 하여금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를 수용하도록 하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와 이후 이 지역에 대한 경제협력방안이 포괄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및 평화적 이용문제는 배치제한지역 설정문제와 관련하여 논의되어야 한다. 더욱이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로 인해서 지뢰와 탱크저지물, 철조망, 방어벽 등을 제거할 경우, 북한의 기습공격이 용이해진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는 배치제한지역 설정과 병행되어야 한다.²⁸⁾

(2) 배치제한지역 설정

남북한의 군사력을 군사분계선 후방지역으로 이동배치하고 일정한 범위의 배치제한지역을 설정하는 방안은 서울과 평양지역의 안전을 보장하고 군사적 돌발행동에 대해 사전대응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미국도 한

27) 제성호,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참조.

28) 한용섭, “한반도군비통제 협상대안과 평가,” p. 375.

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서 특히 전진배치된 북한군사력의 후방배치를 강조하고 있다.

남북한 전력구조의 특징은 휴전선부근에 과도한 병력과 무기가 집중배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남북한은 각각 자신들의 전력배치는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격적 전력배치와 방어적 전력배치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북한은 전쟁 개시후 단기간내에 서울을 점령한다는 속전전략을 택해 왔으며, 비무장지대 50km이내에 65~70%의 전력을 집중배치하고 있다.²⁹⁾ 남한의 경우도 전력의 3분의 2를 비무장지대를 따라 전진배치하고 있다. 남한은 1982년부터 미국의 Air Land Battle Doctrine을 채택해서 적의 공격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후방기지와 취약지구 에 대한 공격을 상정하고 있다.³⁰⁾ 이처럼 휴전선부근에 집중적으로 전진배치된 남북한의 전력구조로 인해 단위지역당 군사력의 집중도가 높기때문에 우발적인 충돌이나 소규모 충돌이 대규모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격적인 군비축소에 합의하기 이전이라도 휴전선부근에 전진배치된 병력의 후방이동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그런데 배치제한지역설정문제에는 전략상 문제점과 비용문제 등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배치제한지역설정과 부대재배치는 남북한의 방위전략의 전면적인 수정을 초래함으로써

29) 국방부, 「국방백서 1991~1992」, pp. 101~116; 지만원, “남북한군대를 30만으로 감축하는 것이 가능한가?” 「월간조선」, (1990.7), pp. 163~164.

30) Chung-in Moon, *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Domestic Perceptions, Regional Dynamics, International Penetrations*, p. 31

군축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다. 남한과 북한의 현재 방어선이 자연적·지리적 조건을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로 배치제한지역을 설정하고 부대를 재배치할 경우 또 다른 방어선을 형성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또한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서울과 평양의 거리가 다름으로써 남한과 북한이 비대칭적으로 배치제한지역을 설정해야되는 문제도 있다. 더욱이 부대재배치에 따른 막대한 비용, 신속한 부대재이동이 힘든 북한의 도로사정, 철저한 현장조사의 어려움 등 장애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다.³¹⁾

배치제한지역설정이 논의될 경우, 서울이 휴전선으로부터 50km 떨어진 반면, 평양은 150km 떨어진 지리적 위치의 비대칭성때문에 배치제한지역 설정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다.³²⁾ 노태우대통령은 1991년 9월 24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군사연습과 부대이동의 사전통보, 상주감시요원 교환, 군인사교류, 군부대간 직접통신망 설치 등 신뢰구축조치를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은 주요무기 및 병력을 군사분계선 50Km이북으로 철수하고, 남한은 10Km이남으로 철수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서울과 평양의 거리가 1:3인 점을 감안, 배치제한지역을 1:3의 비율로 적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북한은 군사분계선에서 110Km인 황주까지 비무장지대를 설치하는 반면, 남한은 군사분계선에서 40Km인 서울 의정

31) 이영호 남북대화사무국 자문위원 초청 간담회, 민족통일연구원, 1995.9.15.

32) Byung-Joon Ahn, "Arms Control and Confidence-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rew Mack, ed., *Asian Flashpoint: Security and the Korean Peninsula* (Canberra: Allen and Unwin, 1993), p. 107.

부·일산선까지 비무장지대를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³³⁾

또한 병력의 이동시간을 기준으로 배치제한지역을 설정할 수도 있다. 북한의 병력이 휴전선까지 진격하는데 24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을 가정하여 군사분계선 북쪽으로 30Km, 남쪽으로 20Km 배치제한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³⁴⁾ 그리고 배치제한지역에 대해서 1개사단이상 규모의 군대가 투입될 경우, 상대방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³⁵⁾

(3) 후방배치 장비 및 병력의 감축

배치제한지역설정은 군축과 관련되어 있다. 유럽의 경우 병력감축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었기 때문에 배치제한지역을 설정할 필요가 없었다. 남북한의 경우 배치제한지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후방배치 예정인 병력을 우선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이 동시에 논의될 수도 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배치제한지역과 군축이 동시에 진행됨으로써 배치제한지역을 확대하고 전방배치된 군사력부터 감축하는 구도가 될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남북한의 군비축소후 남겨진 지상군의 20%미만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40km이내 지역에 배치하고, 40%미만의

33) 류재갑, “남북한 안보관계의 과제: 군비통제,” (한국정치학회, 광복50주년기념 남북한관계 학술대회, 「분단 50년과 통일의 전망」, 1995.11.11).

34) 한용섭, “한반도군비통제 협상대안과 평가,” pp. 373~374.

35) Yong-Sup Han, “Breaking off the Cold War Chain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elevance of Arms Control Measures,” *Thre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4 (1995), p. 80.

병력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0km이내에 배치할 수도 있을 것이다.³⁶⁾

(4) 주한미군의 배치조정과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및 배치제한지역에 대한 북한의 합의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북한에게 추가의 대가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후방배치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주한미군을 최소한 판문점의 공동경비구역 및 전방 지역에서 철수하여 한강이남의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문제가 논의될 수도 있다. 이 방안은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해 온 북한에게 상당한 선물이 될 수 있으며, 주한미군과 북한군간의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우려하고 있는 미국이 동의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주한미군의 후방배치에 따른 이전비용문제가 한·미간 중요사안으로 대두될 것이다. 주한미군의 후방배치와 관련하여 대상이 되는 주한미군의 부분적 철수가 검토될 수도 있다. 이것은 미국의 대동북아 및 대한반도전략이라는 틀속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한·미간 긴밀한 정책적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북한이 군비통제방안의 주요사안으로 외국군대와의 합동

36) Alexei G. Arbatov, "Sheathing Korean Dagger: Problems and Opportunities for the Northeast Asia Arms Control and Security Process," *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What Lessons Can We Learn from European Experience?* (Seoul: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1990), p 103.

군사훈련중지를 제안한 점을 감안하여, 배치제한지역설정과 함께 팀스피리트의 규모축소나 영구중단문제가 협의될 수 있다. 북한은 팀스피리트훈련이 방어적 목적을 지닌 것이 아니라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공격목적의 지닌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북한이 팀스피리트훈련을 북한에 대한 중요한 군사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군비통제방안에서 외국군대철수 및 외국군대와 의 합동군사훈련중지가 전제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북한은 1985년과 1987년을 제외하고는 1983년 이후 팀스피리트훈련이 실시되는 동안 비상경계령을 발동하였으며, 정규군외에도 예비병력을 동원하여 일상적인 경제활동이 중단되었다.³⁷⁾

북한은 남북대화를 거부하거나 중단하는 구실로 팀스피리트훈련을 거론해 왔다. 이점을 감안하여 남북고위급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의 분위기조성을 위해 통상 2개월동안 실시되던 팀스피리트훈련이 1989년에는 10일로 단축실시되었다. 그리고 1990년 팀스피리트훈련의 규모 및 기간이 축소되었다. 1992년의 팀스피리트훈련은 6차 남북고위급회담의 개최를 위한 분위기조성을 위해 중단되었다. 그러나 남북상호핵사찰에 진전이 없음에 따라 1993년 팀스피리트훈련은

37) Yong-Sup Han, "Breaking off the Cold War Charin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elevance of Arms Control Measures,"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4 (1995), pp. 64~65; 김일성은 1984년 동독 호네커공산당서기장과의 회견에서 팀스피리트훈련시 대응을 위해서 한 달반동안 노동자를 동원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구동독정부 남북관계 기밀문서: 김일성-호네커 회담록," 「한국일보」, 1995.10.12.

재개되었다.³⁸⁾ 이후 미·북핵협상과정에서 1994년과 1995년의 팀스피리트훈련은 중단되었다. 이양호 국방장관과 윌리엄 페리 미국방장관은 1995년 11월 4일 2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가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며 96년도 팀스피리트 훈련의 실시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³⁹⁾

이처럼 팀스피리트훈련이 이미 몇차례 중단된 적이 있으며, 북한의 핵동결이 지속되는 한 재개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팀스피리트훈련의 규모축소 및 영구중단문제를 북한의 전진배치병력의 후방이동 및 배치제한지역설정과 동일한 맥락에서 협상하는 것도 한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⁴⁰⁾

나.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및 배치제한지역 설정의 비용부담

비무장지대에 설치된 장비와 시설물들을 철거하고 전방배치된 무기와 병력을 후방으로 이동배치하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

38) Tae-Hwan Kwak, "Current Issues in Inter-Korean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Talks," *The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 (1993), p. 180.

39) 「한국일보」, 1995.11.4.

40) 한용섭은 팀스피리트훈련의 규모축소 및 중단을 군축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팀스피리트훈련의 군사적 중요성을 모의실험한 결과, 팀스피리트훈련을 50%축소할 경우 북한의 전진배치병력중 1개내지 1.5사단을 감축해야 하며 탱크와 같은 공격무기를 100대내지 150대 폐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팀스피리트훈련을 완전중단할 경우 북한의 전진배치병력의 3개내지 4개사단 또는 탱크와 같은 공격무기를 300내지 400대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한용섭, "한반도군비통제 협상대안과 평가," pp. 378~379; 한용섭,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방안," (국제문제조사연구소, 1994년도 국내학술회의 논문집, 「동북아정세변화와 한반도안보」, 1995.1). pp. 227~228.

요된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문제는 북한으로 하여금 무기 및 병력의 재배치에 소극적이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및 배치제한지역 설정에 대한 협상시 소요 비용의 일부를 남한이 부담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독일은 구동독지역에 주둔하였던 소련군의 철수 및 재정착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소련군의 철군을 신속하게 진행시켰다. 1990년 10월 12일 통일독일과 소련은 546,200명에 이르는 소련군의 한시적 독일주둔 조건 및 철군절차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다. 아울러 1990년 10월 9일 소련군의 한시적 독일주둔 및 철수에 따르는 재정적 문제에 대한 과도기조치에 관한 조약도 체결되었다. 양측은 12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경제조건에 적절한 병참공급의 확보, 주둔군 훈련활동에 관한 조정, 소련주둔군과 그 가족의 독일 법질서 준수, 환경 및 부동산문제, 손상에 대한 보상, 관세 및 세금문제, 병력수송문제, 직업전환 교육 대책, 주택건설계획 등에 대해서 협의하였다. 독일은 소련군의 한시적 주둔비용, 귀향 운송비, 구소련지역내 주택건설, 직업전환교육 등을 위한 정착비용으로 총 120억DM를 4년동안 분할지불하도록 하였으며, 그 가운데 78억DM는 주택건설, 2억DM는 직업전환교육용이며, 30억DM는 무이자 차관이었다. 그리고 1992년 10월 16일 콜수상과 옐친대통령은 공동성명을 통해 철수병력의 정착기금으로 러시아에게 5억 5,000만DM를 추가제공하기로 하였다.⁴¹⁾

41) 통일원, 통독과정연구 94-IV, 「독일통일백서」, (서울: 통일원, 1994), pp. 28~30.

남북한의 경우, 북한이 비무장지대의 시설 및 장비를 철거하는 비용을 차관형식으로 제공하고 이 지역에 공단건설시 그 이익금에서 상환하도록 할 수 있다. 그리고 배치제한지역 설정으로 인한 무기 및 병력의 후방이동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군인들의 주택건설 등 정착비용의 일부를 무이자 차관으로 제공할 수도 있다.

다. 공증정찰 협력과 현장검증

운용적 군비통제 단계에서는 특정지역에 검사요원이 파견되어 조약여부를 확인하는 현장검사, TV카메라나 원격감시장치와 같은 기계장치에 의한 현장검사, 상주감시소 설치, 영공정찰을 허용하는 영공개방 등에 대해서 남북한간 합의해야 한다.⁴²⁾이 가운데서도 운용적 군비통제단계에서는 독자적으로 실시되었던 공증정찰을 조정하고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산하에 「검증실무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검증실무위원회에서 검증의 대상, 절차, 방법 등에 관해서 「검증부속합의서」를 채택해야 할 것이다.

영공개방은 군사시설에 대한 검사요원들의 직접방문을 들러 쓴 쟁점을 피할 수 있으며, 현장검사에 비해서 침투효과가 크지 않으면서도 검증목적은 달성할 수 있고, 신뢰구축에 효과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불가침분야 부속합의서」 채택시, 북한

42) 전성훈, 「한반도군비통제방안 연구: 유럽군비통제조약의 시사점과 관련하여」, p. 154.

이 한·미양국의 대북한 정찰능력이 우월함을 우려하여 상대방에 대한 정찰활동금지를 주장한 것을 고려할 때, 영공개방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동의를 얻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단계적인 방법으로 영공개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차적으로 비무장지대에서 독자적으로 실시되어 온 남북한의 공중정찰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다. 남북한이 비행회수, 사전통보절차, 제한고도, 비행경로 등에 대한 합의를 통해 기존에 실시된 공중정찰에 대해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⁴³⁾ 독자적 공중정찰에 대한 협력체제는 우선적으로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를 검증하는데 중점을 둔 뒤, 점차 배치제한지역에 대한 공중정찰을 조정하는 것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스톡홀름협약에 의하면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에 대해 현장검증을 통보하면 36시간내에 이를 수락하도록 규정되었다. 단 어느 회원국도 1년에 세번이상의 현장검증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한 회원국으로부터 1년에 1회 이상의 현장검증을 받을 필요는 없도록 하였다.⁴⁴⁾

남북한의 경우에도 비무장지대 및 배치제한지역에서 병력·장비·시설의 철수 등 합의사항이 제대로 준수되었는지 검증하는 현장 검증단이 운영되어야 한다. 현장검증단은 남북한 단독으로 구성

43) 전성훈, Amy E. Smithson, "남북한 영공개방: 의의와 가능성," 「국제정치논총」, 제32집 2호 (1992), pp. 362~369.

44) Johan Jorgen Holst, "Confidence and Security Building in Europe: Achievement and Lessons," *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What Lessons Can We Learn From European Experience?* (Seoul: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1991), p. 9.

되거나, 남북한 공동으로 구성될 수도 있으며, 국제적 합동감시단이 구성될 수도 있다. 초기 단계에는 사전통보에 의한 무조건적인 사찰보다는 사전합의된 분야에 대해서만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이를 점차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3단계, 미·북관계 정상화 및 남북연합: 구조적 군비통제

3단계에서는 미·북간 관계정상화에 논의가 진행되는 한편, 남북한간에는 남북연합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실천에 옮겨질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개발, 인권문제, 미군유해송환문제, 군비통제협상의 진전 등이 미·북관계개선의 속도와 범위에 영향을 미칠 것임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미국은 대북수교협상과정에서 거시정책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북한의 잠재적 성장가능성과 투자대상으로서의 가치가 고려될 것이다. 미국과 베트남의 국교정상화의 경우 미군실종자문제로 인한 미국내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미재계는 베트남에 대한 경제적 진출을 이유로 조기 관계정상화를 주장하였다.⁴⁵⁾ 미국은 대

45) 미국은 1991년 4단계에 걸친 대베트남관계개선구도를 밝힌 이후, 1991년 12월 베트남에 대한 관광금지 해제, 1992년 12월 미기업들의 베트남 사무소 개설 허용, 1993년 7월 베트남에 대한 여신 허용, 1993년 9월 미기업의 현지프로젝트 참여 허용, 1993년 12월 대베트남 경제제재 일부 해제, 1994년 2월 대베트남 금수전면 해제, 1995년 1월 연락사무소 개설, 1995년 7월 국교정상화 등의 수순을 밟았다. 미·베트남관계개선 4단계 구도에 대해서는 Robert G. Sutter, *Vietnam-U.S. Relations: The Debate Over Normalization* (Washington, D. 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October 27, 1994) 참조.

북관계 개선과정에서도 북한의 경제적 투자가치를 염두에 둘 것이며, 이를 중국 동북지역 및 러시아 극동지역과 연결시키는 동북아시아경제권형성에도 관심을 표명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북한과의 관계개선은 탈냉전 후 동북아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일환이라는 측면을 지니고 있다. 중국과 미국과 정치·군사·안보적으로 긴장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은 중국을 견제하는 지렛대라는 측면도 지니고 있다.

미·북관계정상화와 남북관계 개선이 반드시 동시병행적으로 추진되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미·북관계개선과정에서 평화체제전환, 군비통제, 주한미군문제 등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아왔던 구조적 제약요인들이 해소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반이 조성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기존 대남정책 및 대외정책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미·북관계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남북연합을 형성하기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남북한간 과학, 기술, 학술 분야의 인적교류와 협력사업이 증가하고 남북무역사무소나 남북대표부의 설치도 추진될 것이다.

가. 구조적 군비통제

(1) 군비축소의 우선순위와 기준

병력과 무기의 감축우선순위에 대해서 남한은 무기감축을 우선

실시하고 무기감축에 따라 병력을 감축할 것을 제안했다. 반면, 북한은 병력감축을 우선실시하고 병력감축에 상응하게 군사장비도 축소할 것을 주장했다. 이처럼 군비축소의 우선순위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이 다른 것은 군사력의 현황과 위협인식, 병력동원구조의 상이성 등에서 기인한다. 남한은 북한의 무기가 우세하기 때문에 비대칭적 전력구조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무기감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남한은 병력감축에 대해서는 검증하기가 힘들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 그리고 남한은 북한이 동원체제의 성격상 병력감축을 한 뒤에도 병력을 재동원하기가 용이하며, 병력감축후에도 우세한 재래식 무기를 계속 보유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이처럼 군비축소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남북한간 입장대립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남북한의 입장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병력과 무기의 감축을 동시병행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공격무기를 해체하고 동 무기를 보유한 부대의 병력을 감축하는 방안을 택할 수 있다.

또한 현재 남한이 공격무기면에서 북한에 비해 열세에 놓여있기 때문에 무기우선감축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남북한경제력격차와 군사현대화의 격차 등으로 인해 무기의 전력지수면에서 남북한이 거의 대등한 단계에 이르면, 남한도 병력우선감축을 고려할 수도 있다. 북한은 동원체제의 성격상 병력재동원면에서 유리하지만, 남한은 휴전선에서 서울이 가깝기 때문에 동원

된 예비군병력을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전선에 배치할 수 있는 이 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병력감축을 하더라도 예비병력을 신속하게 전투병력으로 동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예비병력동원체제를 수립할 경우, 위기사태에 대응할 수 있다.⁴⁶⁾

한편, 군비축소의 기준에 대해 남한은 군사력이 우세한 북한이 남한수준으로 먼저 감축한뒤 동수를 감축하자는 「상호동등수준 달성후 동수균형감축」방안을 주장해 왔다. 반면, 북한은 남북한이 동시에 일정수준(1단계 30만, 2단계 20만, 3단계 10만)으로 감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우세한 군사력을 남한수준으로 감축하는 방안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북한의 제안대로 일시에 동일수준으로 남북한의 군사력을 감축하는 것도 현실성이 없다.

따라서 군사력감축기준으로는 일차적으로 「동수보유원칙」에 입각하여 대상무기 및 병력에 대한 「동일상한선」(equal ceiling)을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상한선에 도달하기까지의 감축방식은 남북한간의 기존 전력차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동율감축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력차를 예로 들면, 남한과 북한의 전차보유대수가 각각 2,000대와 3,800대라고 가정하고 보유상한선을 1,000대로 설정할 수 있다. 이경우, 남한과 북한은 각각 1,000대와 1,800대를 감축시켜야 한다. 그리고 감축대상전차에 대해 단계별

46) 이영호 남북대화사무국 자문위원 초청 간담회, 민족통일연구원, 1995. 9.15.

로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여 감축하는 것이다. 1단계에서 감축비율을 10%로 설정하였을 경우, 남한은 100대, 북한은 180대를 감축해야 한다.⁴⁷⁾

(2) 무기감축

군사력의 종합적 지수는 양적 수치외에 정규군의 전투준비태세, 장비의 활용도, 비정규군의 동원속도 및 규모, 무기체계의 실전평가율, 무기체계의 실전활용 및 정비율, 방공체계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결정된다.⁴⁸⁾ 그런데 양적 수치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남북한의 군사력은 비대칭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 북한의 군사력은 남한에 비해서 병력이 우세할 뿐만 아니라 공격무기에 있어서 우세하다. 예를 들면, 북한의 전력은 남한에 비해 전차는 1.8배이며, 야포는 2.3배, 전술기는 1.6배에 이른다. 남한은 남북한간의 전력불균형과 특히 북한의 공격무기 우세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있다. 군비축소에 의해서 북한의 공격무기의 위협을 줄이고 긴장완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47) 이철기, “통일시대를 위한 한반도군비통제 및 군축의 새로운 방향 모색,” (한국정치학회, 광복 50주년기념 남북한관계 학술대회, 「분단 50년과 통일의 전망」, 1995.11.11), p. 27.

48) 이정민, “남북한 신뢰구축과 군비축소방안,” 「통일문제연구」, 4권 1호, 13호, (1992년 봄), pp. 94~95.

<표 1> 남북한 군사력 현황

구 분			한 국		북 한	
			육 군	54만명	65.5만명*	91만명
			해 군	6만명		4.6만명
			공 군	5.5만명		8.4만명
					104만명**	
지상군	부 대	군 단	11개		19개	
		사 단	50개***		53개	
		여 단	21개		99개	
	장 비	전 차	2,050여대		3,800여대	
		장갑차	2,200여대		2,600여대	
		야 포	4,650여문		10,850여문	
해 군	전 투 합	180여척		434척		
	지 원 합	60여척		330여척		
	잠 수 합	2척		26척		
공 군	전 술 기	520여대		850여대		
	지 원 기	160여대		500여대		
	헬 기	630여대		290여대		

* 방위병 미포함, 해군에 해병병력 포함.

** 육군에 해병병력 포함.

*** 해방사단 포함.

출처: 「국방백서 1995~1996」 (서울: 국방부, 1995), p. 72.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 1(CFE 1)에서는 전차(battle tank), 장갑차(armoured combat vehicle), 야포(artillery), 전투기(combat aircraft), 공격헬기(attack helicopter) 등 다섯가지의 주요 공격무기를 감축대상무기(Treaty Limited Item: TLI)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NATO와

WTO는 TLI에 대해서 감축의 상한선을 설정하였다. WTO의 경우 전차를 4만 1천대에서 2만대로, 장갑차는 5만 2천대에서 3만대로, 야포는 4만 9천문에서 2만문으로, 전투기는 1만 4천대에서 6천 8백대로, 공격헬기는 3천대에서 2천대로 감축하기로 되었다. 그리고 NATO도 이 기준에 따라 감축하되, 장갑차는 오히려 3천대를 증강하고, 전투기도 500대를 증강해야 했다. 이것은 NATO와 WTO간의 전력차에서 비롯된 결과였다.

<표 2> CFE의 무기감축 합의 결과

무 기 명	NATO의 전력	WTO의 전력	전력감축 상한선
전 차	22,000	41,000	20,000
장 갑 차	27,000	52,000	30,000
야 포	21,000	49,000	20,000
전 투 기	6,300	14,000	6,800
공 격 헬 기	2,000	3,000	2,000

출처: "Treaty on Conventional Armed Forces in Europe," *Arms Control Today*, vol. 21, no. 1 (January/February 1991), supplement p. 9.

남북한의 경우에도 무기감축의 우선적인 대상으로 다섯가지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며, 무기의 정의에 대해서도 CFE에서 적용되었던 개념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이 장거리탄도미사일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남북한의 경우 전술지대지미사일을 감축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이

동식 대공무기, 연료, 탄약, 수송장비 등도 감축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무기감축을 위해 우선 최종적인 무기상한선은 남한이 보유하고 있는 전력보다 하향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 그다음 CFE에서와 같이 남북한이 TLI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감축기분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약 3단계로 나누어 남북한이 비례적으로 무기감축을 해야 한다.

무기감축의 세부방안으로 일시에 동일무기의 전체를 감축하는 일괄감축방안보다는 감축대상무기를 횡적으로(감축대상무기의 종류), 종적으로(해당 감축대상무기의 적용범위)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 예를 들면, 1단계에서 전차와 전투기, 야포를 감축하되(횡적 감축), 야포의 경우 155mm이상을 감축대상으로 설정(종적 감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감축대상에 장갑차와 공격헬기를 포함시키고(횡적 감축의 확대), 100 mm이상의 야포를 감축대상에 포함(종적 감축의 확대)하는 것이다.

무기의 구체적 감축방법으로는 ①파괴(절단, 폭파, 변형, 분쇄 등), ②전차와 장갑차의 경우 비군사용(불도져, 크레인, 유전굴착용, 수송용 등)으로의 전환, ③전시용으로 사용, ④공격헬기를 제외한 4개 감축대상 무기를 표적용으로 사용, ⑤전투기와 공격헬기는 교육용으로 사용 등 CFE 1에서 적용되었던 방법을 원용할 수 있다. 여기에 추가로 감축대상무기를 공중촬영이 용이한 지역에 방치하여 녹슬도록 하는 방안도 채택될 수 있다.⁴⁹⁾

49) 전성훈, 「한반도 군비통제방안 연구: 유럽 군비통제조약의 시사점과 관

(3) 병력감축

북한은 무기감축보다 병력감축에 대해서 지속적인 우선순위를 두어왔다. 북한이 병력감축을 우선시하는 이유는 남한에 비해서 감축대상의 병력을 은폐하거나 제대시킨 병력을 재동원하기가 유리하며, 유사시에 대비해 무기보유를 고수하기 위한 것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북한의 전력구조 및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이 병력감축에 우선순위를 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측면도 있다.

북한은 자본집약적이라기보다 노동집약적 전력증강에 치중해 왔다. 1974년부터 1990년기간동안 남한이 65만의 병력을 유지하면서 국방비를 불변가격기준으로 3.79배 증가한 반면, 북한은 동일한 기간동안 병력을 약 2배로 증가하면서도 국방비증액은 1.72~2.77배 증가한 점을 보면, 북한의 군비증강이 병력증강에 치중했음을 알 수 있다.⁵⁰⁾

북한에게 과도한 병력은 경제적·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북한에서 군대는 국방수단일 뿐만 아니라 완전고용을 위한 일종의 직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은 과도한 병력의 유지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단위 부대단위로 식량 및 소모품을 자급자족하도록 하고 있으며 과잉인력을 건설현장에 투입하고 있다.⁵¹⁾ 북한은

련하여], pp. 185~193.

50) 함택영, “북한경제의 침체와 대외관계,” 황의각 외, 「북한사회주의경제의 침체와 대응」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5), pp. 128~129.

51) 북한군인들은 복무시간의 약 2분의 1을 건설작업과 기타 경제활동에

막대한 병력을 보유함으로써 완전고용을 실현하고 군복무를 통해 정치적 사회화를 시키는 이점을 지니고 있으나, 노동인구의 군복무로 인해 노동인구의 부족과 막대한 병력유지의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이 병력감축에 관심을 두고 있는 측면도 있다.

병력의 감축기준으로 북한은 남북한이 1단계 30만명, 2단계 20만명, 3단계 10만명으로 감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급진적인 병력감축안은 여러가지 점에서 비현실적이다. 첫째, 이러한 동일기준에 의한 감축은 남북한의 비대칭적 병력구조를 무시한 것이다. 둘째, 국방을 위한 최소한의 병력이 40만에서 45만이라는 견해에 의하면, 최종적으로 10만명으로의 감축은 남북한의 군사적 현실을 무시한 것이다.⁵²⁾ 또한 10만명으로의 감축은 통일한국을 고려한 방위력수준으로도 적절하지 않다. 셋째, 북한의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단기간내에 대규모병력감축을 수용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북한의 제안대로 3~4년안에 10만명으로 병력감축을 실시한다면, 북한 총병력의 90%를 감축하는 것이며, 이것은 매년 22만 5,000명을 감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량의 제대군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고용기회를 창출한다는 것은 북한에게 커다란 부담이 될 것이다.⁵³⁾

할당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Asia Watch and Minnesota Lawyers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mmittee, *Human Rights in the DPRK* (Washington, D. C.: Asia Watch, 1988), p. 184.

52) 한용섭,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방안,” pp. 229~230.

53) 이정민, “남북한신뢰구축과 군비축소방안,” 『통일문제연구』, 4권 1호, 13호 (1992 봄), p. 100.

남북한은 병력보유상한선을 설정하고 각각 감축대상병력을 동일비율로 감축해야 한다. 남북한병력의 최종수준은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군사력과 통일한국의 최종적 군사력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병력 전체의 최종수준은 남북한전체 인구의 1%인 70만명선이 적절할 것이다.⁵⁴⁾이 경우 남북한은 각각 35만명의 병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⁵⁵⁾ 남북한이 병력보유상한선을 각각 35만명으로 설정하면, 남한은 약 30만명을 감축해야 하며, 북한은 약 68만명을 감축해야 한다. 이에 따라 3단계에 걸쳐 병력감축을 실시하되, 각 단계별로 감축규모의 33%를 감축하도록 한다. 즉 남한은 각 단계별로 전체 감축병력의 33%인 9만 3천명씩을 감축하도록 한다. 그리고 북한은 각 단계별로 감축병력의 33%인 22만 6천명을 감축한다.

그리고 정규병력에 대한 감축을 실시한 후 비무장지대 및 최전방 경계지역에 대한 경비는 국경수비대가 담당하고, 해안경비는 해안경비대가 담당하며, 수도권경비는 지역수비대나 보안경찰대

54) 문영일, “한반도 군비축소·군비통제에 대한 포괄적인 제안,” 안병준, 문영일, 『한반도의 군비통제: 쟁점과 대안』 (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994), pp. 77~93.

55) 남북한의 최종병력규모로는 각각 40만명이 적절하다는 견해도 있다. Alexei G. Arbatov, “Sheathing Korean Dagger: Problems and Opportunities for the Northeast Asia Arms Control and Security Process,” *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What Lessons Can We Learn from European Experience?*, p. 102; 또한 병력감축은 지상군부터 실시하고 해군 및 공군의 감축은 마지막 단계에 실시하되, 병력하한선은 25만~30만이 적절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류재갑, “남북한안보관계의 과제: 군비통제,” (한국정치학회, 광복 50주년기념 남북한관계 학술대회, 『남북한안보관계의 과제』, 1995.11.11) 참조.

가 담당하도록 하며, 후방경계 및 방호는 지방자치단체의 민방위대가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⁵⁶⁾

나. 군축비용 지원 및 북한군수산업의 민수화 지원

병력과 무기를 감축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병력감축시 퇴직 군인들에 대한 연금지급과 직업전환교육비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퇴역한 젊은 군인들에 대한 일자리창출이 필요하다. 또한 감축대상이 된 무기를 폐기처분하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CFE협정에 의한 무기감축시 항공기 폐기비용은 약 47,000DM, 전차는 약 12,000DM, 장갑차는 약 5,000DM, 박격포는 약 128DM의 비용이 소요되었다. 그리고 군비축소시 검증기술의 개발과 검증을 위해서도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⁵⁷⁾

이처럼 군비축소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을 위해서 북한에게 무이자 내지는 저리의 장기차관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특히 병력감축시 퇴직군인들의 직업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 한국의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의 무기감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군수산업의 민수산업전환에 대한 지원을 제안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물론 군수산업의 민수전환에 남한의 기업이 참여하는 것은 북한군사력의 노출을 의미

56) 류재갑, “남북한안보관계의 과제: 군비통제,” (한국정치학회, 광복50주년 기념 남북한관계 학술대회, 「남북한안보관계의 과제」, 1995.11.11) 참조.

57) 박주현·김상범, “군비통제와 국방예산의 증감요인,” 「국방강론」 3집, 6권, p. 161.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감한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분야별로 구분을 하여 경공업분야로 전환이 용이한 군수산업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민수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이 과정에서 시설 및 재원투자에 남한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병력감축을 추진할 경우 북한의 제대군인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고용구조의 확대를 위한 대규모의 남북경협사업이 필요하다. 북한의 군수산업을 민수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해당 분야의 군인들을 민수전환사업의 고용자로 선발할 수 있다.

다. 영공개방의 확대와 상주감시단 운영

남북한군비축소단계에서 효과적인 검증방법의 채택은 최대 현안으로 대두될 것이다. 검증은 각 사회의 군사안보상황에 대한 완전한 투명성을 수반하며, 나아가서 그 사회전반의 공개성과도 관련되어 있는 문제다. 따라서 남북한 군비축소를 검증할 수 있는 효과적인 검증절차에 대해 합의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폐쇄성과 배타성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군비축소를 검증하기 위해서 영공개방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군비축소단계에서는 비무장지대 및 배치제한지역에 대한 공중정찰의 범위를 확대하여 남북한의 해안선을 정찰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한반도 내륙을 정찰범위에 포함시켜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정찰범위를 확대(예를 들면, 군

사분계선에서 40km, 100km, 140km로 정찰범위를 확대함)하는 것이다.⁵⁸⁾ 특히 무기감축이 특정지역에 집결되어 이행되는 경우, 그 지역에 대한 공중정찰이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상주감시단은 전략적 요충지나 교통요지에서 부대이동상황과 군사력의 변화를 상설적으로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상주감시단은 비무장지대의 주요 지역과 배치제한지역의 주요 지점에 설치되어야 한다. 상주감시단의 활동은 상호 보장되어야 하며, 이들의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도록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상주감시단의 구성방안으로는 남북한의 독자적 감시단, 남북한공동감시단, 국제적 합동감시단 등의 방법이 있다.⁵⁹⁾ 그런데 지정된 지역에 대한 검증에 한정된 상주감시단의 활동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짧은 기간의 사전통보만으로 의심지역에 대해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불시검증에 대해서는 남북한이 합의하기 힘들 것이다.

58) 전성훈·Amy E. Smithson, “남북한 영공개방: 의의와 가능성,” pp. 369~370.

59) 남만권, “군비통제 감시 및 검증에 대한 소고,”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강론」 3집, 6권, pp. 10~11.

<표 3> 남북한군비통제의 포괄적 이행방안

구분 단계/시기	미·북관계	남북관계	군비통제방안
1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북연락사무소 개설 ○ 대북제재추가해제 - 북한의교관의 미 국내 활동범위 확대 - 금융거래, 무역확대, 미기업의 평양사무소 설치, 미기업의 대북직 접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분적 남북대화 재개 - 남북경제협력 - 종교·문화분야의 인적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 통신 - 부대이동 및 군사연습의 통보 - 군인사교류 - 군사훈련 참관 - 정보교환 ○ 신뢰구축과 대북 경협 및 차관제공 ○ 남북한의 독자적 검증
2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북간 정치·군사 협상 - 미군유해송환 -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수출 문제 - 북한의 생화학 무기개발문제 - 북한인권문제 - 북·미간 군사 협상 통로개설문제 - 평화체제전환 문제 - 한반도 군비통제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화해·협력 단계 - 남북한경협확대: 임가공확대, 대북직접투자, 에너지개발, 관광개발, 사회간접자본 투자 - 사회·문화분야 협력 - 남북간 인적 교류확대 - 통신·통상·통행협정 - 평화체제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용적 군비통제 및 선별적 군축 - 비무장지대 비무장화 및 평화적 이용 - 배치제한지역 설정 - 후방배치 장비 및 부대에 대한 감축 - 주한미군배치 조정과 팀스피리트훈련 중지 ○ 비무장지대 비무장화 및 배치제한지역 설정의 비용부담 ○ 공중정찰 협력과 현장 검증
3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북관계 진전 및 관계정상화 - 미·북기본조약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연합실현방안 구체화 - 남북한간 교류협력 증대 - 남북무역사무소 및 남북대표부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적 군비통제 - 무기감축 - 병력감축 ○ 군축비용지원 및 북한군수산업 수화 지원 ○ 영공개방 확대와 상주감시단 운영

제VI장 결 론

세계적인 탈냉전과 군축추세를 반영하여 남북한간에도 「남북기본합의서」 및 「불가침분야 부속합의서」가 체결됨으로써 한반도 긴장완화와 군비통제를 위한 기본적 골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북한핵문제를 계기로 미·북간에 직접 대화가 진행된 뒤, 북한은 대·미관계 및 대일관계 개선에 최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 및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미·북관계 개선과정에서 미·북간 직접 군사채널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남한을 배제한 채 한반도의 군비통제와 평화체제전환문제 등을 일괄타결하려고 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남북한 군비통제의 포괄적 틀을 마련함으로써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도모하고 남북평화공존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군비통제의 세부적 사안이나 절차보다는 군비통제의 포괄적 이행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포괄적 군비통제방안에 입각하여 한·미간 공동보조를 취하고 이를 토대로 대북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첫째, 남북한 군비통제는 세부적인 군사적 문제이기에 앞서 미·북관계 및 남북관계의 전반적 상황 및 남북한 내부의 정치·경제적 상황 등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북한군비통제의 접근방향으로 미·북간 군비통제협상 방지, 군비통제와 평화체제 전환, 군비통제와 한·미안보관계 조정, 군비통제에 대한 남북

한의 인식론적 접근, 남북한간 군비통제 협상, 신뢰구축 및 군축에 대한 일괄협상, 대북인센티브 제공 등을 검토하였다.

둘째, 남북한군비통제의 단계적 추진방안을 미·북관계 및 남북관계 진전과 연계하여 제안하였다. 제1단계는 미·북연락사무소 개설 및 남북대화재개단계이다. 제2단계는 미·북관계 진전 및 남북화해·협력단계이며, 제3단계는 미·북관계 정상화 및 남북연합단계이다.

셋째, 단계별로 각 각 군비통제방안과 대북협상수단, 검증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제1단계의 신뢰구축방안으로는 통신, 부대이동 및 군사연습의 통보, 군인사교류, 군사훈련 참관, 정보교환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대북유인수단으로 대북경협 및 차관을 제공하고, 남북한이 독자적 검증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제2단계에서 운용적 군비통제방안으로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및 평화적 이용, 배치제한지역 설정, 주한미군 배치조정과 팀스피리트훈련 중지 등을 상정하였다. 대북협상수단으로 비무장지대 비무장화 및 배치제한지역 설정의 비용부담을 제시하였고, 검증방법으로는 공중정찰 협력과 현장검증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제3단계에서는 구조적 군비통제방안으로 무기감축과 병력감축을 실시하고 대북협상수단으로 군축비용지원 및 북한군수산업의 민수화 지원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검증방법으로는 영공개방확대와 상주감시단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남북한의 군비통제에는 동북아안보환경과 남북한 각각의 내부적 요인, 그리고 남북관계라는 세차원의 요인이 중층적으로 작용

하고 있다. 또한 남북한군비통제는 동북아군비통제, 통일후 남북한군사통합 및 군사전략 등과도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복잡한 요인들은 남북한군비통제의 성격과 추진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주도에 의해서 남북한군비통제방안을 추진하더라도 이러한 다양한 요인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남북한군비통제는 한·미안보동맹관계와 관련되어 있다. 남북한군비통제과정에서 한·미동맹관계의 성격, 주한미군의 역할, 한국군의 작전지휘권문제, 한·미합동군사훈련, 유사시 한·미간 작전협조 등의 문제가 조정되어야 함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또한 남북한군비통제는 동북아군비통제와 관련되어 있다.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지역에서는 군비경쟁이 진행되고 있으며 영토분쟁, 무역마찰 등 잠재적 긴장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남북한군비통제의 추진과정 및 남북한의 최종적 군사력보유기준은 동북아군사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동북아다자안보협력체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동북아국가간 관심분야의 차이, 동북아국가간 신뢰구축의 결여, 발전경험의 차이, 다자안보협력의 경험 결여, 잠재적 긴장요인 등 여러가지 장애요인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에서 군사적 문제와 환경, 인권, 경제협력 등 협력안보를 위해서 다자간 안보협력체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북아다자안보협력체가 구체화될 경우, 남북한군비통제는 동북아군비통제의 맥락에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남북한군비통제는 남북한간 공동안보 및 협력안보개념의 공유를 필요로 한다. 남북한군비통제는 다른 두 국가간의 군비통제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추진되어야 할 군비통제라는 점에서 특징을 지니고 있다. 더욱이 남북한군비통제는 통일 후 남북한의 군사적 통합 및 군사전략과도 관련되어 있다. 남북한군비통제의 중간목표는 남북한간 협력안보개념의 도입이며 더 나아가서 최종적 목표는 남북한군사력의 통합이다. 따라서 남북한군비통제과정에서 남북한 협력안보개념의 도입과 남북한군사력의 통합 및 통일한국의 외교·군사전략에 대한 장기적 비전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구영록 외. 「남북한의 평화구조」. 서울: 법문사, 1990.
- 국방부. 「국방백서 1991~1992」. 서울: 국방부, 1991.
- 김명기. 「남북한연방제통일론」. 서울: 탐구원, 1991.
- 민족통일연구원. 「북한핵문제와 남북관계: 전개과정 및 발전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 . 「통일환경과 남북한관계: 1992~1993」.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1.
- . 「통일환경과 남북한관계: 1991~1992」.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 박종철. 「한국의 중화학공업정책: 추진배경과 투자조정과정」. 성남: 현대사회연구소, 1990.
- 박홍규. 「남북한군사문제에 대한 연구」.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1989.
- 신정현. 「한반도의 군비통제」. 서울: 예진출판, 1990.
- 안병준. 「탈냉전기의 국제정치와 한반도통일」. 서울: 법문사, 1993.
- 외교안보연구원. 「남북한군축문제에 관한 연구」.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1989.
- 이호재 편. 「한반도군축론」. 서울: 법문사, 1989.

- 전성훈. 「한반도군비통제방안연구: 유럽 군비통제조약의 시사점과
관련하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 차영구. 「남북한군축협상 추진방안 모색」. 서울: 통일원, 1991.
- 통일원. 「월간 북한동향」. 서울: 통일원, 1994.
- .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서울: 통일원, 1990.
- 통일원·통독과정연구 94-IV. 「독일통일백서」. 서울: 통일원, 1994.
- 하영선.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서울: 청계연구소, 1991.
- 한국국방연구원. 「남북한 군비통제협상 적용모형 연구」. 서울: 한
국국방연구원, 1992.
- . 「남북한 군비통제 모형개발 II」. 서울: 한국국방
연구원, 1993.
- 함택영 외. 「남북한군비경쟁과 군축」.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
연구소, 1992.
- Ashton B, Carter, William J. Perry and John D. Steinbrunner, *A
New Concept of Cooperative Security*. Washington D. 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92.
- Davis, Zachary S. Larry A. Niksch, Larry Q. Nowels, et al., *Korea:
Procedural and Jurisdictional Questions Regarding Possible
Normalization of Relations With North Korea*. Washington D.
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November 29, 1994.
- Han, Yong-Sup. *Designig and Evaluating Conventional Arms Control
Measures: The Case of the Korea Peninsula*, RAND
Corporation, N-3411, 1993.

- Krasner, Stepan D. ed., special edi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36, no. 2 (Spring 1982).
- Mack, Andrew and Paul Keal, *Security and Arms Control in the North Pacific*. Sydney: Allen and Unwin, 1988.
- Moon, Cunnng-in. *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Domestic Perceptions, Regional Dynamics, International Penetrations*. Washington D.C.: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1995.
- Nolan, Jane E. *Global Engagement: Cooperation and Security in the 21st Century*. Washington D. 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94.
- Segal, Gerald. ed., *Arms Control in Asia*. London: Macmillan, 1987.
- Sutter, Robert G. *Vietnam-U.S. Relations: The Debate Over Normalization*. Washington D. 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October 27, 1994.
- Testimony of Robert L. Gallucci, Ambassador Before the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Subcommittee on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December 1, 1994.
- The Economist Intelligence, *Country Report: South Korea and North Korea*, 2nd quarter 1995.
- U. S. Department of State, *United States Security Strategy for the East Asia-Pacific Region* (February 1995).
- U. S. House of Representatives, *104th Congress 1st Session, Korean Nuclear Agreement Resolution* (1995.1.25).

2. 논문

Ahn, Byung-Joon. "Arms Control and Confidence-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in Andrew Mack, ed., *Asian Flashpoint: Security and the Korean Peninsula*. Canberra: Allen and Unwin, 1993.

Arbatov, Alexei G. "Sheathing Korean Dagger: Problems and Opportunities for the Northeast Asia Arms Control and Security Process," *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What Lessons Can We Learn from European Experience?*. Seoul: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1990.

Dean, Jonathan "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How is the European Experience Applicable,"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3, no. 1 (Summer 1991).

Goody, James. "Confidence and Security Building in the Korean Peninsula: The Negotiating Agenda," *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Seoul: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1990.

———. "Operational Arms Control in Europe: Implications for Security Negotiations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 no. 1 (Summer 1990).

Haas, Peter M. "Introduction: Epistemic Communities and

- International Policy Coordin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6, no. 1 (Winter 1992).
- Han, Yong-Sup. "Breaking off the Cold War Chain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elevance of Arms Control Measures,"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4 (1995).
- Harrison, Selig. "Concessions on All Sides Can Save the North Korea Accord,"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April 11, 1995).
- Hayes, Peter. "International Missile Trade and the Two Koreas,"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5, no. 1 (1993).
- Hunter, Robert E. "Lessons for Korea from Conventional Arms Control Talks in Europe,"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 no. 1 (Summer 1990).
- Jorgen Holst, Johan. "Confidence and Security Building in Europe: Achievement and Lessons." *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What Lessons Can We Learn From European Experience?* Seoul: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1991.
- Kim Byung Hong, "North Korea's Perspective On The U. S.-North Korea Peace Treaty,"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vol. 13, no. 4 (Winter 1994).
- Kwak, TaeE-Hwan. "Current Issues in Inter-Korean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Talks." *The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 1993.

Macintosh, James. "Inter-Korean CBMs and Arms Reduction: The Conventional Forces Dimensio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fty Years of National Independence: Past, Present, and Future of National Security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June 16~17, 1995).

_____ "The Role of Confidence Building in Inter-Korean Security Relations," (1995 ROK-Canadian Arms Control Workshop, *North-Pacific Arms Control: Confidence-Building at a Regional Level*, Hosted by Arms Control Research Center,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Korea and The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 Canada, note 5).

Mack, Andrew.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Problems and Prospects,"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vol. XI, no. 2 (Summer 1992).

Mikheev, Vasily. "Reforms of the North Korean Economy,"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5, no. 1 (1993).

Moon, Chung-in. "Reviving the South Korean Defense Industry: Challenges and Strategie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fty Years of National Independence: Past, Present, and Future of National Security in the Republic of Korea by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June 16-17, 1995).

- Moon, Chung-in. "The Political Economy of Defense Industrialization in South Korea: Constraints, Opportunities, and Prospects,"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vol. 2 (Fall, 1991).
- Niksch, Larry A. "U.S. Troop Withdrawal from South Korea: Past Shortcomings and Future Prospects," *Asian Survey* (March 1981).
- U.S. Department of State, "Easing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January 20, 1995).
- 강성학. "한반도 군축을 위한 신뢰구축 방안." 이호재 편. 「한반도 군축론」. 서울: 법문사, 1989.
- 김명진. "남북한 군비통제검증 및 정보수집 기술." 「국방강론」 3집 6권 (1994).
- 金英鎭. "朝米關係と進展." 「世界」. 1995. 4월호.
- 김창수. "미·북관계 개선에 따른 한·미안보협력 조정방향." 「통일 연구논총」 제4권 1호 (1995).
- . "미국방부 신동아태안보전략 보고서의 배경과 의미." 한국국방연구원. 「주간국방논단」 제573호 (1995. 3).
- 남만권. "경수로문제에 평화협정 연계: 북한이 노리는 목표는 한·미이간, 미군철수." 「민족정론」. 1995년 6월호.
- . "군비통제 감시 및 검증에 대한 소고."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강론」 3집 6권 (1994).

- 남만권·김명진. “남북한 정보교환조치의 협의·실천방향.” 『국방강론』 3집 6권 (1994).
- 남주홍. “군축의 일반이론에 대한 고찰.” 『국제정치논총』 제29집 1호 (1989).
- 류재갑. “남북한안보관계의 과제: 군비통제.” (한국정치학회, 광복 50주년 기념 남북한관계 학술대회. 『남북한안보관계의 과제』, 1995.11.11).
- . “남북한 안보관계의 과제: 군비통제.” 한국정치학회, 광복 50주년 기념 남북한관계 학술대회. 『분단 50년과 통일의 전망』, 1995.11.11.
- 문정인. “남북한 신뢰구축: 그 가능성과 한계,” 함택영 외, 『남북한 군비경쟁과 군축』,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2.
- 박영규. “동·서군축협상의 경험과 한반도 군비축소의 문제.” 이호재 편. 『한반도군축론』, 서울: 법문사, 1989.
- . “한반도에서의 운용적 군비통제방안.” 통일원. 『한반도긴장완화와 평화정착』, 서울: 통일원, 1990.
- 박영호. “남북한간의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 통일원. 『한반도긴장완화와 평화정착』, 서울: 통일원, 1990.
- 박주현·김상범. “군비통제와 국방예산의 증감요인.” 『국방강론』 3집 6권 (1994).
- 박홍규. “유럽의 신뢰성구축방안과 이의 한반도적용가능성.” 『외교안보연구원 논총』,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1986.

- 백운선. “남북한 군축과 분단구조: 체제내적 저해구조의 고찰.” 함택영 외, 『남북한 군비경쟁과 군축』.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2.
- 백진현. “남북한 평화체제구축의 과제와 문제점.” (한국정치학회, 광복 50주년 기념 남북한관계 학술대회. 「분단 50년과 통일」의 전망, 1995.11.11).
- . “휴전협정체제의 대체에 관한 연구.” 통일원.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실천을 위한 모색』. 서울: 통일원, 1991.
- 송대성. “한반도 군축 타당성에 관한 검토: 한반도 군축의 가능성 및 제약성.” 『국제정치논총』 제29집 1호 (1989).
- 안병준. “남북한 군축의 방향.” 『국제정치논총』 제29집 1호 (1989).
- 양성철·조덕현. “남북한 군비통제 제안분석 및 평가.” 『한국정치학회보』 제21집 1호 (1987).
- 유병화. “통일지향적 남북한관계의 법이론 연구.” 통일원.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실천과 제도화연구』. 서울: 통일원, 1990.
- 윤덕민. “북한핵개발과 대북협상.” 『전략연구』, 제3권 (1994).
- 이달곤. “군축이론에 입각한 남북한 군축협상 대안 연구.” 『국방학술논총』 제3집 (1989).
- 이서항. “군축협상의 사례분석과 남북한 군축전망.” 함택영 외. 『남북한군비경쟁과 군축』.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2.
- 이정민. “남북한 신뢰구축과 군비축소방안.” 『통일문제연구』 4권. 1호, 13호 (1992년 봄).

- 이주열. “남북경제교류 지원과 통화통합구상.” 한국개발연구원.
「남북한 경제관계 발전을 위한 부문별 과제연구」.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1.
- 이철기. “통일시대를 위한 한반도 군비통제 및 군축의 새로운 방향 모색.” (한국정치학회. 광복 50주년 기념 남북한관계 학술대회. 「분단 50년과 통일의 전망」. 1995.11.11).
- 전성훈-Smithson, Amy E. “남북한 영공개방: 의의와 가능성.” 「국제정치논총」 제32집 2호 (1992).
- 제성호. “한군군 작전권과 그 환원문제.” 국토통일원. 「군축 및 군비통제에 관한 연구」. 서울: 국토통일원, 1989.
- 지만원. “남북한군대를 30만으로 감축하는 것이 가능한가?” 「월간조선」. 1990. 7.
- 한용섭.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민족통일연구원 주최 학술회의 「한반도평화체제 구축방안 모색」 발표논문. 1995.6.21).
- .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방안.” (국제문제조사연구소, 1994년도 국내학술회의 논문집. 「동북아정세변화와 한반도안보」. 1995.1).
- . “한반도군비통제 협상대안과 평가.” 「국방학술논총」, 제6집 (1992).
- 함택영. “북한경제의 침체와 대외관계,” 황의각 외, 「북한사회주의 경제의 침체와 대응」.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5.

3. 기 타

「동아일보」.

「말」.

「한국일보」.

Korea Herald

● 發刊資料目錄 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북한의 權力構造와 김일성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 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 94-04 金日成사후 北韓의 政策展望과 우리의 統一方案

- 94-05 統一文化와 民族共同體 建設
- 94-06 南北韓關係 現況 및 95年 情勢展望
- 95-01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摸索
- 95-02 남북화해·협력의 실천지표: 「민족발전공동계획」
- 95-03 金正日 政權의 向方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 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 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화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 秩序 豫測(IV)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I)
-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
分析을 中心으로
- 93-21 북한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 공동체」 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 1945~1993
- 94-01 북한 관료부패 연구
-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
-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04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 94-05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 94-06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 94-07 金正日 리더십 研究
- 94-08 北韓 民族主義 研究
- 94-09 金正일의 軍事權力基盤

- 94-10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11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 增強이 韓半島安保에 미칠 影響
- 94-12 統一韓國의 政黨制度와 選舉制度
- 94-13 南北聯合 形成 및 運營 方案研究
- 94-14 金正日體制의 對南政策 展望
- 94-15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分析
- 94-16 北韓 指導部의 情勢認識 變化와 政策展望
- 94-17 北韓의 對外經濟 開放政策 現況과 展望
- 94-18 統一韓國의 對外經濟協力 方向: 亞·太地域 多者間 協力關聯
- 94-20 「조선전사」 解題
- 94-21 1995年 NPT延長會議과 韓國의 對策
- 94-23 北韓 住民들의 價値意識 變化: 蘇聯 및 東歐와의 比較연구
- 94-24 韓國 民族主義 研究
- 94-26 中國과 北韓의 政治體制 比較研究: 黨·軍關係의 變化와 關聯
- 94-27 統一韓國의 登場에 따른 東北亞地域 安保構造 變化 對應策
- 94-28 南北韓 文化政策 比較 研究
- 94-29 南北韓 協商行態 比較研究

- 94-30 南北韓 特殊關係의 法的 性格과 運營方案
- 94-31 統一韓國의 權力構造
- 94-32 統一韓國의 社會福祉政策
- 94-33 統一韓國의 政治理念
- 94-34 統一 以後 國民統合 方案 研究
- 94-35 統一韓國의 經濟體制
- 94-36 國際機構를 통한 南北韓 交流·協力增大 方案 研究
- 95-01 러·北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02 金正日 政權의 人權政策 變化展望
- 95-03 北韓 知識人政策의 變化
- 95-04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 95-05 金正日 政權의 權力엘리트 研究
- 95-07 서독의 분단질서관리 외교정책 연구
- 95-08 北韓의 對美國政策 變化 研究
- 95-09 韓·日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10 김정일 體制下의 軍部 役割: 持續과 變化
- 95-11 남북한 군비통제의 포괄적 이행방안: 미·북관계
및 남북관계 개선 관련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 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の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 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會議를 계기로 본 亞·太 地域協力の 發展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 北韓 核問題와 美北關係 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의 대외개방 현황과 전망: 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核問題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우리의
對中政策 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 9期 7次會議 結果分析
- 94-10 韓·러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4~6)
-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 94-1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7~9)
- 94-17 李鵬 總理의 訪韓結果 分析和 對中政策 方向
- 94-18 美國의 中間選舉 以後 對韓半島政策 變化展望
- 94-19 北韓의 變化와 金正日 政權의 將來
- 94-20 核·經協連繫 緩和措置와 北韓의 對應政策 展望
- 95-01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政勢 및 韓半島政策 展望
- 95-02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5.1~3)
- 95-03 中國의 政局展望: 第8期 全人大 3次會議 結果를
中心으로

- 95-04 金正日 承繼體制 鞏固化 動向
- 95-05 北韓의 食糧支援 要請背景과 對北韓 食糧支援 方案
- 95-06 金日成 死後 1年: 북한정세의 동향과 전망
- 95-07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廢棄의
意味와 評價
- 95-08 江澤民 中國 國家主席 訪韓 結果分析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 ~ 1993. 6. 30)
-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 ~ 1993. 9. 30)
-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 ~ 1993. 12. 31)
-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 ~ 1994. 3. 31)
-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 ~ 1994. 6. 30)

- 94-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7. 1 ~ 1994. 9. 30)
 94-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0. 1 ~ 1994. 12. 31)
 95-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 1 ~ 1995. 3. 31)
 95-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4. 1 ~ 1995. 6. 30)
 95-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7. 1 ~ 1995. 9. 30)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3~1994
 94-01 北韓 核問題斗 南北關係
 94-0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4~1995

〈論叢〉

-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1994. 8)

統一研究論叢 第3卷 2號(1994. 12)

統一研究論叢 第4卷 1號(1995. 8)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3(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4(1995)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 (1993)

한미 WORKSHOP : US-Korean Relations at Time of Change
(1994)

<資料>

- 92-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 92-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 93-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
-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 94-01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上)
- 94-02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中)
- 94-03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下)

<통일문화시리즈>

- 94-01 統一文化研究(上)
- 94-02 統一文化研究(下)

남북한 군비통제의 포괄적 이행방안:
미·북관계 및 남북관계 개선 관련

研究報告書 95-11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政策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2-4726, FAX : 231-4304

印刷處 웃고문화사 전화 : 267-3956

印刷日 1995년 12월 일

發行日 1995년 12월 일
